

프랑스의 기업행정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김 현 희



비교법제 연구 13-20-②

프랑스의 기업행정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김 현 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프랑스의 기업행정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Analysis of 2012 Loi Warsmann on
Administration of Enterprises in France

연구자 : 김현희(부연구위원)

Kim, Hyun-Hee

2013. 5.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프랑스 정부는 기업에 관한 법령 간소화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였음
 - OECD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에 관한 복잡한 법률 및 제도로 인한 비용은 프랑스 국내 총생산액의 3~4%를 차지하며, 행정서식의 폐지로 인한 기업의 비용절감은 평균 2,600만 유로에 달한다고 함
- 법령의 수와 행정 체계의 복잡성이 증대됨으로써 야기되는 불편함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적극적인 입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하였음
- 이에 2012년에 제정된 소위 바르스만법(loi warsmann)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행정간소화의 근본적인 의미와 필요성을 재조명하며, 특히 기업행정과 관련하여 도입된 주요 간소화 조치들을 소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행정간소화법의 연혁
 - 2007년 12월 20일자 「법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

- 2009년 5월 12일자 「법의 간소화, 명료화 및 절차부담 감경에 관한 법률」
- 2011년 5월 17일자 「법의 간소화 및 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률」
- 2012년 3월 22일자 「법의 간소화 및 행정절차부담 감경에 관한 법률」

□ 소위 2012년 「바르스만Ⅱ법」의 입법취지

- 법령 규정의 명확화 내지 단순화를 통해 행정을 간소화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합리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제한적 법령을 개폐하여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검토

- 급여명세서의 간소화
-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일 창구화
- 복지문제 사전적 답변조치의 개선
- 자유직업의 개념 정의
- 장인(匠人)의 새로운 정의
- 체불기한의 제한
- 최저임금 협상 개시의무 신설
- 유급휴가권의 자동적 개시
- 정보공개제도의 간소화
- 소액 공공조달의 간소화

- 운영보고서 등의 법원 제출의무 간소화
- 상장기업의 정보자료집 발간의무 폐지
- 원격근무(자)의 개념 정의
- 경영금지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파일 신설
- 직업외 원인에 기한 근로부적격 관련법률 개정
- 기명식 사회보장 회사신고제 실시

Ⅲ. 평 가

-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개별법 단위로 특정 조문에 대한 준치 여부를 논하는 경향이 있는 데에 반하여, 프랑스에서는 관련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일괄적인 개정 작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다양한 법 영역에서 간소화가 요구되는 사항을 “포괄적” 내지 “일괄적” 입법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하려는 바르스만 법의 입법방식에 관하여는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방식의 법률이 현재 프랑스의 경제상황을 일종의 “위기”로 규정하고 그로부터의 탈출이 “긴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논법이 입법의 분야로 흡수된 것으로 이해됨
- 행정간소화법의 시행 초기인 현 상황에서 확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려우나, 소위 “포괄적” 내지 “일괄적” 입법

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노력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IV. 기대효과

-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간소화 조치를 하나의 법률로써 개정하는 프랑스의 입법방식과 그러한 입법 과정 중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주제어 : 행정간소화, 규제완화, 입법개선, 바르스만법, 기업행정, 법령간소화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French Government recognized the simpl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n enterprises as a major factor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 According to OECD, extra costs arising from complicated legal system concerning French enterprises are estimated to command 3~4% of French GDP, and corporate cost saving from removing administrative red tapes will amount to 26 million euro in average.
- To deal with inconveniences caused by increased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intensified complic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they have promoted in full scale the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through active legislation since 2007.
-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illuminate the basic meaning and necessity of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through legislation process of the so-called Loi Warsmann which was enacted in 2012. In particular I want to introduce major simplification measures adopted in relation to administration of enterprises.

II. Major Contents

- History of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Law
 - 「Act on Simplification of Law」 dated December 20, 2007
 - 「Act on Simplification, Clarification and Procedural Burden Reducing of Law」 dated May 12, 2009
 - 「Act on Simplificat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Law」 dated May 17, 2011
 - 「Act on Simplification and Procedural Burden Reducing of Law」 dated March 22, 2012
- Legislation intent of the so-called 「Loi Warsmann II」 of 2012
 - It aims to streamline administration through clarification or simpl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provisions, and further rationalize control and support of enterprises, and resultantly mitigate administrative burden levi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amending or repealing the existing regulatory laws and regulations, ultimately leading to pursuit of economic vitalization and improved people's lives.
- Review of Major Contents
 - Simplification of pay stub
 - Single windowing of information provided by user

- Improvement of advance answering measure on welfare matter
- Concept definition of liberal profession
- New definition of master craftsman
- Restriction in period of overdue payment of wage
- Creation of obligation to start minimum wage negotiation
- Automatic start of paid leave right
- Simplific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Simplification of micro public procurement
- Simplification of obligation to submit management report, etc. to court
- Abolition of obligation to publish information data base of listed companies
- Concept definition of telecommuting/telecommuter
- Creation of national-level information file on persons barred from management
- Amendment of law related to the unqualified for labor due to non-occupational cause
- Implementation of corporate reporting system on registered-type social security

III. Evaluation

- In regulatory reform Korea has tendency to discuss whether to retain or abolish certain article by unit of individual law, how-

ever, France is different from us in that they have conducted comprehensive analysis of all the related legal systems and attempted integrative amendment of laws.

- The legislation method of Loi Warsmann that tried to solve at one sweep the simplification demands in diverse law domains through “comprehensive” or “integrative” legislation, has met many criticisms during review process of the bill.
- Nonetheless, it is understood that such amendment type law made political circles' reasoning (that defines the present French economic situation as a kind of “crisis” and escape from it is “urgent” pending issue) be absorbed into the legislation sector.
- It might be difficult to make definite evaluation at the present state which is initial stage of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law, however, the law can be evaluated as a meaningful effort to overcome the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by secur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through the so-called “comprehensive” or “integrative” legislation.

IV. Expected Effect

- It is expected that reviewing the French legislation method that amends simplification measures spanning diverse fields by single law, as well as the issues discussed during such

legislation process, will give implications to the legislation efforts of Korea.

▶ Keyword :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Deregulation, Better regulation, Loi Warsmann, Administration of Enterprises, Simpl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I. 행정간소화의 의의	17
II.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추진 배경	20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 2 장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정책 동향	25
제 1 절 EU의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	25
I. “더 나은 입법”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관심	25
II. EU의 간소화 정책과 프랑스에서의 실현	30
제 2 절 프랑스 행정간소화 법제의 연혁	32
I. 개 관	32
II. 제1차 간소화 법률(2007년 12월 20일자 법률)	35
III. 제2차 간소화 법률(2009년 5월 12일자 법률)	36
IV. 제3차 간소화 법률(2011년 5월 17일자 법률)	39
V. 제4차 간소화 법률(2012년 3월 22일자 법률)	41

제 3 장 프랑스의 기업행정 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47
제 1 절 바르스만법의 입법취지	47
제 2 절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50
I. 국회 법제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	51
II. 수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토의	53
III. 국회 채택법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토의	55
IV. 헌법위원회의 결정	58
제 3 절 바르스만법 주요 내용의 분석	61
I. 급여명세서의 간소화	61
II.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일 청구화	62
III. 복지문제에 대한 사전적 답변조치의 개선	63
IV. 자유직업의 정의	64
V. 장인(匠人)의 새로운 정의	65
VI. 체불기한의 제한	66
VII. 최저임금 협상 개시의무 신설	67
VIII. 유급휴가권의 자동적 개시	68
IX. 정보공개제도의 간소화	69
X. 소액 공공조달의 간소화	70
XI. 운영보고서 등의 법원 제출의무 간소화	71
XII. 상장기업의 정보자료집 발간의무 폐지	72
XIII. 원격근무(자)의 개념 정의	72
XIV. 경영금지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파일 신설	73
XVI. 직업외 원인에 기한 근로부적격 관련법률 개정	74
XVI. 기명식 사회보장 회사신고제 실시	75

제 4 장 결 론	77
제 1 절 바르스만법 제정 이후의 추가 조치	77
I. 부처간 위원회(CIMAP)의 조직	77
II. 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간소화의 추가 조치	79
제 2 절 평가 및 시사점	80
참 고 문 헌	85
부 록	8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행정간소화의 의의

경제 및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규제나 간여(干與)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행정의 신속성이나 비용절감이 현대 국가에서 행정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건설,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간소화는 정권을 불문하고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는 주제에 속한다.

1990년대 이래로 OECD는 행정간소화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05년 보고서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를 통해 행정간소화 작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시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경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게 규제부담 총량을 최소화하고 규제편익을 고려하여 부담의 총량을 측정하도록 권고하였고, 회원국들은 이러한 원칙을 승인하였다.¹⁾ 이에 우리 정부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계 기관의 연구가 진행 또는 완료되었고, 행정현장에서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행정간소화(administrative simplication)라 함은 어의적으로는 ‘행정의 간소화’로 풀이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우 불명확하고 불확정적 개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문적 특성인 대륙법의 계수로부터 발전한 법학과 미국에서 유입된 행정학·경영학 등의 혼재,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 등은 행정간소화의 개념을 더욱 다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무

1) OECD/KOREA Policy Centre, 행정간소화 전략, 2010, 11면 이하.

엇보다도 행정간소화는 법 또는 행정의 일반적 속성인 규제 및 그 규제개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 행정간소화보다 규제개혁이 보다 먼저 정착하게 되어 더 친숙한 상황이고, 제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규제라는 관념은 정부의 활동과 행정의 작용을 규제(regulation)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 온 미국공법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러한 규제개념의 법학적 논의는 미국의 전체 행정과정 즉 규제체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OECD는 규제에 대하여 일반적 정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제하에,²⁾ 규제의 범주에 있어서 그것을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s),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s), 행정적 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s)의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용효율성(cost-effectiveness) 또는 규제의 법적 품질(legal quality of regulations)과 정부절차(government formality)의 향상을 의미하는 “규제의 질 향상”을 규제개혁이라고 정의한다.³⁾

이 가운데 행정적 규제란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서류업무 및 행정절차를 의미한다(소위 red-tape). 즉, 규제(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를 개별·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정부의 행정규제로 인하여 수범자(대표적으로 기업)는 정보제공의무(사전 또는 사후 거래보고 등 각종 보고, 특정 활동에 대한 허가·신청 등 각종 허가·신청, 통계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정보의 수집·보관·제출의무) 등 행정부담을 안게 된다. 수범자의 행

2) 일부분헌에서 규제는 비공식적 제도(문화, 관행, 관습 등)로서의 사회전반을 관통하는 게임의 규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간의 의식과 행태를 의식적으로 고치려는 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개입 내지 규제는 대부분 공식적인 제도로 현출되는데, 공식적 제도는 대개의 경우 국가권력이 ‘공익’목적을 위해 국민과 기업 등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김병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 n° 106, 2008, 390면 이하.

3) OECD,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1997, 6면 이하.

정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규제개혁의 대상이 됨은 앞서 보았다. 다만 최근에는 red-tape로 대표되는 행정부담의 경감·완화는 ‘행정간소화 전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규제개혁과 행정간소화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사실 그러한 동일한 목표지향점으로 인하여 개념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나아가 양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실익도 실무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으며, 다만 규제개혁이나 행정간소화 전략의 수단, 방법 또는 정도가 핵심적인 과제이다.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본격적인 규제개혁이 시작되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1994)이나 행정절차법(1996), 행정규제기본법(199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1) 등이 제정되면서 다수의 복잡했던 규제 및 절차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 왔다. 그리고 1993년 설치된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건의 규제가 개선되었고, 1997년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도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개혁 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998년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를 발족(1998. 4. 16)하고,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⁵⁾

4)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간소화와 규제개혁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양자는 그 실행방식과 고려요소 내지는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행정간소화와 부담경감프로그램은 점차 규제완화시스템이라는 더 넓은 영역의 제도에 포함되어 실행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행정간소화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목표로 간주되기 보다는 전체적인 규제완화의 개선 목표 아래 존재하는 하나의 목표 또는 도구로 간주되기도 한다. OECD, 규제개혁과 행정간소화 : 행정간소화를 위한 국가전략, 2008, 21면 이하.

5) 규제개혁위원회 연혁 참조([http : //www.rrc.go.kr/](http://www.rrc.go.kr/)).

앞서 보았듯이, 규제개혁이나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⁶⁾ 즉,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회원국의 참가·협조를 통해 통일적인 간소화 전략을 수립하여 전파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국의 규제제도나 정부절차의 시스템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구조가 다르고 입법부 역할의 정도 차이로 인하여 각국에 다양한 간소화 전략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각국은 간소화 전략수립의 대상 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점이 누적된 분야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며, 정부가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수단과 방법이 다르다고는 해도 행정간소화가 행정부담의 완화·경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지향점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에, 개별 국가의 행정간소화에 대한 비교·검토는 그 나라의 규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시대적 상황과 제도의 틀 및 종합적 결과물인 법령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간소화 전략의 구상과 실현에 대하여 다시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추진 배경

OECD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기업에 관한 복잡한 법률 및 제도로 인한 비용은 프랑스 국내 총생산액의 3~4%를 차지하며, 행정서식의 폐지로 인한 기업의 비용절감은 평균 2,600만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기업에 관한 법령 간소화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인식했다.⁷⁾

6) 특히 미국은 2001년 보건의료분야에서 간소화에 관한 법률(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Compliance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7) http://archives.gouvernement.fr/fillon_version2/gouvernement/la-simplification-du-droit-un

2011년 현재 프랑스에는 8,000개의 법률과 400,000개의 시행령이 있다고 한다.⁸⁾ 이처럼 법령의 수와 체계의 복잡성이 증대됨으로써 야기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미 1991년 국사원(Conseil d'Etat)이 그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는데, 그와 비교하여 정작 입법부는 국가법령체계를 간결하게 만드는 작업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12대 국회(2002.6.19.-2007.6.19.)가 들어서면서부터 2003년 7월 2일 「법의 간소화를 위한 정부권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3-591호)과 2004년 12월 9일 「법의 간소화 및 적용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4-1343호) 등이 채택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의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제13대 국회(2007.6.20.-2012.6.19.)에 들어서는 관련 입법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이전의 입법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정도의 것이라면 제13대 국회에서 통과된 아래의 4개 법률은 모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007년 12월 20일자 「법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
- 2009년 5월 12일자 「법의 간소화·명료화 및 절차부담 감경에 관한 법률」
- 2011년 5월 17일자 「법의 간소화 및 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률」
- 2012년 3월 22일자 「법의 간소화 및 행정절차 감경에 관한 법률」

사실 위 네 건의 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장-뤽 바르스만(Jean-Luc Warsmann)이라는 의원이 개입을 하였고, 특히 2011년과 2012년의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전자를 일명 「바르스만 I 법」(loi warsmann I), 후자를 「바르스만 II 법」(loi warsmann II)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중 특히 후자의 2012년 법률, 즉 「법의 간소화 및 행정절차부담 감경에 관한 법률」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프랑

-enjeu-pour-la-competitivite-des-entreprises.html

8) Assemblée nationale,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s du mardi 11 octobre 2011, n° 87 A.N. (C.R.), p. 6089, 에티엔느 블랑(Étienne Blanc) 의원의 발언.

스 정계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입법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⁹⁾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2007년도부터 적극적인 입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행정의 간소화(simplification)를 추진한 프랑스의 입법배경과 과정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행정간소화의 근본적인 의미와 필요성을 재조명하며, 간소화의 수단으로서 도입된 구체적인 규정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행정간소화는 그동안 실무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실현방안 내지는 도구 등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이론적으로는 행정간소화 보다는 차라리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빈번하게 연구되어 왔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의 수단으로서의 행정간소화의 기능과 효과에 관하여 학술적인 논의를 새삼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프랑스에서 최근 입법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간소화의 실제 모습을 엿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EU를 대표하는 국가이기에 그의 간소화 정책 및 법제를 살펴보기 전에 EU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간소화에 관하여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U의 간소화 정책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연혁적으로 살펴본다(제2장). 또한 소위 ‘바르스만법Ⅱ’이라고 불리는 2012년도 행정간소화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그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포함되었기에 그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들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 법의 주요

9) 홍기원, “2012년 3월 22일 행정절차간소화법의 입법과정과 쟁점들”, 프랑스 행정간소화에 관한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3. 5. 3, 51면.

내용과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본다(제3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프랑스 행정간소화법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가 일반적인 행정간소화가 아닌 “기업행정” 간소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간소화에 관한 4건의 법률에 속한 규정들 중에서 가능한 한 기업의 對정부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범위를 한정하며,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는 부록에서 주요 규정을 언급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행정간소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따른 입법형식과 입법과정 상의 논의 등을 통한 간소화법의 의의에 대한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즉 (규제의 범위를 가능한한 폭넓게 인정하여) 다양한 절차와 서식의 간소화를 규제개혁 내지규제완화의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그러한 법역에서의 세부적인 간소화 사항들을 하나의 입법에 목록화하여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는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하는 것이며, 각 개별 조문의 내용에 대한 간소화 조치의 적정성 내지 우리나라의 개별 규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위함이 아님을 미리 명시하는 바이다.

이러한 최신의 입법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온·오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프랑스 의회보고서의 검토 및 인용을 통하여 논의의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밖에도 프랑스 법 전문가 및 규제 실무가 등의 워크숍을 통하여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행정간소화에 관한 프랑스 입법례의 소개는 우리나라에서 간소화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입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장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정책 동향

제 1 절 EU의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

I. “더 나은 입법”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관심

자유무역을 위해 국경이란 장벽을 허무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세계화(mondialisation) 시대에 들어와서, 시민들은 정부에게 안전(sécurité)과 복지(bien-être)를 보장해줄 것을 기대하고,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건 경쟁을 위한 같은 조건이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규의 제정이 요구되는데, 이 입법 작업은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 걸쳐 이루어지며, 특히 환경법과 경쟁법 분야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 전자는 사람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후자는 기업의 공정하고 생산적인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

신속한 입법개선 없이는 대응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시장의 세계화나 정보의 홍수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국가수준을 넘어 국제수준의 법제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단일하고 통합된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으로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한 협력은 결국 유럽 전역에 걸쳐 효과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에서 이를 기획하였다. 유럽연합의 주요 입법목표는 물자·서비스·사람·자본의 자유로운 이동(libre circulation)을 통해 단일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992년 단일시장 수립 이래 점차 회원국의 국내법을 대체해 온 유럽연합의 규범은 관료주의(bureaucratie)를 완화시켜 나라마다 다른 시스템을 통일함으로써 경쟁의 장벽을 허물었다. 뿐만 아니라 교류 활성화의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 - 유행성 전염병, 마약·위조품 거래, 불법이민 등 - 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정보통신이나 의약품 또는 생명공학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에도 유럽 차원의 공통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유럽공동체위원회는 관보를 창간한 이래 유럽공동체가 채택한 입법안은 무려 97,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법안의 기한이 만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해당 법안을 삭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견해에 따르면, 상당한 양의 복잡한 법령이 그 이용자에게 유럽공동체에 대한 회의주의를 불러일으키도록 조장하여 결국 유럽공동체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 인플레이션은 프랑스에서도 역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국회에서 다룬 법률이 1983년 1,067면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721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졌다.¹⁰⁾

“더 나은 입법”, 즉 입법개선(Mieux légiférer, better regulation)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사실 그동안 최고의 규정(best regulation)에 대한 개념은 경제 분야 내지 경쟁법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던 것이 1992년 12월의 에뎀부르그(Édimbourg) 유럽심의회부터 법률의 간소화와 개선은 유럽공동체의 당면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유럽공동체심의회에서 “더 나은 입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2002년부터 방대한 규모의 ‘입법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규제환경을 일반적으로 단순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료주의를 완화하고 입법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와 기업에게 더 적합한 법을 입안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입

10) Rapport public 2006 du Conseil d'État (p. 266) d'une étude du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réalisée en 2005. (2005년 정부사무국의 연구를 인용한 국사원의 2006년도 보고서 p. 266면)

법의 개선, 한마디로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법안 검토와 관련된 몇 단계의 조치가 연계되었다.

- ① 집행위원회의 중요제안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작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확립
- ② 시행 중인 법령의 단순화 프로그램의 실시
- ③ 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한 유럽연합 각료회의와 유럽의회에서의 심의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제안의 철회까지도 고려하기 위한 의안 평가
- ④ 집행위원회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집된 견해들의 고려
- ⑤ 입법자와 관련 당사자의 자율적 규제 등 현행 법령 규정들에 대한 대안 모색

1. 유럽공동체법의 “개혁”에 기초한 간소화 전략

유럽공동체의 간소화는 우선 2005-2008년 동안 채택하였던 법령의 간소화 전략으로서 2005년 10월에 이루어졌다.¹¹⁾ 유럽공동체의 기득권에 반하는 법령 편찬과 그들 간에 위배되거나 반복되는 법률 문안을 다시 수정하며, 필요한 경우 좀 더 융통성이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법률 문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함으로써 주로 유럽공동체 법령을 간소화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효과의 최대화와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안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집행위원회는 중요 제안을 할 때 반드시 영향평가(évaluation d'impact)를 하는데, 2003년 이래 해마다 평균 150건 이상의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다. 전문가의 지식과 테크닉이 동원되는 이 과정에서 애초 입안 시 있었던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범위에서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11) COM (2005) 535.

입법평가라는 객관적 절차 외에 의견수렴이라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절차를 거친다. 다음 문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행정비용은 1차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지만 결국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입법(législation européenne)에 따른 잠재적 행정비용(coûts administratifs potentiels)과 그 부담(charges)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대부분 유럽연합의 지침은 중요 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적용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잠재적 행정비용을 미리 산출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산출방식을 일부 모범적 국가(네덜란드, 영국 등)의 사례를 적용하여 순행정비용(coûts administratifs nets)을 추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일부 특수 분야 입법에서는 직접 조사하는 것을 병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유럽연합 지침의 적용에 따른 비용 부분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기업들의 행정부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통계작성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서식들을 단순화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세법규 개정을 추진하였다. 지침 외의 법규는 유럽의회나 각료회의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법의 간소화 노력의 성공 여부는 유럽연합의 모든 기관들 간의 책임분담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 정책은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법 또는 준비 중인 법안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현실적인 실천이 될 것이다. 2005년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의결을 통과한 것까지 포함한 모든 법안을 검토한 끝에 70개를 철회시켰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그것을 단일법전에 더 간결한 표현으로 조문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령정비작업이다. 여기서는 조문 표현 자체가 이해곤란하거나 법령 간 상호모순되는 규정들과 유사·중복 내지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이 대상이 된다.

2. 유럽법제의 간소화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유럽법제의 간소화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채택한 다양한 조치의 효율성을 사전과 사후에 평가할 목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초기부터 유럽공동체위원회가 제시한 규정 또는 지침의 제정계획은 유럽경제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 비용과 이득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반하도록 하였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2005년 6월 15일,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업무의 연관성을 더 높이고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정의 영향평가를 강화하고자 새로운 내부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영향평가 방식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규정을 검토하기 이전에 적절한 효과 수준을 한정함으로써 부차적이고 비례적인 원칙에 합당하도록 하며, 유럽공동체에서 입법 발의를 주창하지 않거나 법규, 자율 규정(상호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적 기관들 간의 협약)과 상호 규정(예를 들어, 입법에서 정한 목적의 실현을 사회협력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에게 위임하는) 중에서 대안을 우선시하는 가능성 부여
-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3가지 주안점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럽의 정책(경제, 사회, 환경)과 연계성에 대한 검토, 이전 버전보다 더 경제적 경쟁력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을지라도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측면과 환경을 검토

3. 유럽공동체 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

2006년 11월,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유럽공동체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적 업무부담”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안하였다.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유럽연합과 회원국가에게 지금부터 2012년까지 “행정 업무의 감축 목표”를 25%로 정하였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공동체 국가는 이러한 목표를 가진 사업계획을 기계적이고 초보적인 실망스런 시스템이라 판단하여 집행을 거부하였다.¹²⁾

유럽연합의 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¹³⁾이란 표제를 붙인 2007년 1월 보고서에서 유럽공동체위원회는 행정비용과 업무 부담에 대한 내용을 한정하였는데, “적합한 행정부담 비용은 장기적이며 직접적인 재무비용과 구조적 영향을 제외하고 규정에 의거한 사업으로부터 유발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규격화된 비용 산정 방식에 따라 “기술적인 비용”과 “행정비용”으로 나누어진다. 행정비용은 공공기관, 사적 기관에게 활동 또는 생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의무규정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 협회, 공공당국 및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II. EU의 간소화 정책과 프랑스에서의 실현

유럽의 입법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간소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27개 규칙 대신에 단 한 개의 규칙”).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법률 규정을 검토하고 합리화하며,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적

12)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Examen stratégique du programme “Mieux légiférer” dans l’Union européenne, du 14 novembre 2006, COM(2006) final. (유럽연합의 “더 나은 입법” 프로그램에 관한 전략검토위원회 보고서, COM(2006) final, 2006. 11. 14.)

13)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du 24 janvier 2007 Programme d’action pour la réduction des charges administratives dans l’Union européenne, COM (2007) 23 final. (유럽연합의 행정업무 감축 실행계획에 관한 2007년 1월 24일자 유럽공동체위원회 보고서, COM(2007)23 final, 2007. 1. 24.)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유럽법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사실 유럽공동체는 부분별로 현대 사회의 요구와 결부된 필요성, 일련의 구성 단계에서 이행되어온 타협과 유럽공동체를 구성하는 회원국들의 다양성을 복합성에 반영하여 이루어진 법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 입법, 규정, 정책 및 회원국 행정부에 대한 유럽연합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일반화되었다.

유럽법의 규제를 받는 주요 분야에서 (헌법을 제외한) 국내법은 부가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행정부는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사전 검토의 중요성에 의거해 법률 문안을 준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의사결정 절차는 합의를 구성하는 상대적 완만함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발전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일단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법률 문안을 채택하게 되면 이는 유럽연합 국가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채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그것은 유럽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심의회는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유럽공동체의 사안에 대한 고찰과 협력을 강화하고 감독의 명목으로 수집된 정보자료에 관심을 가지는 행위자에게 최상의 정보전달을 보장하고 유럽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회에서 선출한 대표자들과 함께 공조활동을 강화하며 사회협력기관, 지역공동체 및 의회가 구성한 조직적인 시민사회 대표자를 통해 유럽의 의사결정 절차에서 검토 규모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련의 권장사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유럽연합 설립 50년 동안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유럽공동체 법률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 수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의하였으며 프랑스 당국도 여기

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92년부터 법률의 간소화와 개선은 유럽공동체의 우선 당면과제들 중에 포함되었다. 성장과 고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실적보고서가 증명하는 것과 같이 2005년 3월에 “더 나은 입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개선 정책은 궁극적으로 회원국들의 노력과 역할분담에 달려 있다. 이에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 입법평가와 법의 간소화 등의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리더 중 하나인 프랑스 또한 앞장서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 2 절 프랑스 행정간소화 법제의 연혁

I. 개 관

프랑스에서 간소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4건이 제정되었다.

- 2007년 12월 20일자 「법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
- 2009년 5월 12일자 「법의 간소화·명료화 및 절차감경에 관한 법률」
- 2011년 5월 17일자 「법의 간소화 및 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률」
- 2012년 3월 22일자 「법의 간소화 및 행정절차 감경에 관한 법률」

2007년과 2009년 2건의 법률은 당시 통용되지 않는 수많은 법률을 폐지시키고 프랑스 법률 제도의 여러 부문을 명확히 규정하며, 법률 작성이나 법적 오류 또는 등위 관계를 수정하고 일부 과중한 행정절차를 폐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¹⁴⁾ 정부에 있어서 ‘상업, 수공업, 중소기업, 관광, 서비스, 자영업 및 소비 담당’의 르페브르(Frédéric Lefebvre) 차관은 2011년 4월 29일과 12월 6일 법령 간소화에 관한 총회

14) 2007. 05 ~ 2012. 05 제23대 프랑스 대통령 역임.

를 개최하고 공공정책에 관한 일반심의를 연장하여 정부, 의회 및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기업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 간소화에 착수하였다.

법령 간소화에 관한 총회 이후 르페브르 차관은 700여 건에 달하는 기업의 요청 중에서 2011년 4월말 80건, 12월에는 65건의 조치를 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당시 심의는 연간 행정기관 관련 업무로 인해 근로일 50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정과 서류작성으로부터 기업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2011년 1월 17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바르스만 하원의원¹⁵⁾에게 경제발전을 위한 간소화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는데, 그 목적은 중소기업, 수공업자, 농업인 및 자영업자의 지나친 행정 관련업무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바르스만 의원은 총 18개 주제(기업, 사회보장, 경제활동 분야 등)에 관한 280개의 제안으로서, 예컨대 기업에 관한 법률 및 절차 간소화의 경우 8개 주제(기업에 대한 규정, 기업의 사회보장업무, 회계 및 세무의무, 기업창설 및 발전 지원, 수출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조달 및 사기행위 방지)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기업에 관한 법률 및 절차 간소화의 제안은 행정기관 관련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하여 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는데, 이 보고서는 간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¹⁶⁾

15) 바르스만 하원 의원(Jean-Luc Warsmann)은 당시 우파의 집권여당인 UMP(대중운동연합)의 소속으로서 국회 「헌법률·입법·국가일반행정 상임위원회」(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 이하 법제상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2007.6.28.-2012.6.19.)을 역임하였다. 그는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총 4건의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간소화 법률 및 법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6) Jean-Luc Warsmann, La simplification du droit au service de la croissance et de l'emploi,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Juillet 2011, p. 11.

- 절차 또는 정보전달의 실효성 확보
- 특정 규정 또는 의무의 적용 조건에 대한 개정
- 문서형식 또는 규정형식의 작성 방식 강구
- 유럽연합 법률의 국내법 전환 및 개정
- 행정용어의 개념과 법적 정의의 통일화
- 특정 행정계수의 융합 또는 그룹화

그러한 작업 도중에 2011년 5월 17일자로 세 번째 간소화 법률인 법률 제2011-525호가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법률의 질 개선과 간소화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과 장관 부처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는데, 통용 또는 적용되지 않거나 형벌제도에서 상위 규정에 반하는 규정들을 과약하고자 법률가 및 학자들의 협조와 법제상임위원회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법률로서 본 보고서의 대상이기도 한 법령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2012년 3월 22일자 법률 제2012-387호는 기업의 발전 및 고용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의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는 다수의 규정을 포함한다. 즉, 프랑스의 경제적 활력소인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흔히 준수해야 할 규칙과 절차가 많은 것에 대해 가장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하에서는 2007, 2009,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제정되었던 간소화 법률들에 있어서 소위 “기업행정”과 관련이 있는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7) Frédéric Lefebvre, Jean-Luc Warsmann, Loi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è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Dossier de presse, mars 2011, p. 3.

II. 제1차 간소화 법률(2007년 12월 20일자 법률)

2007년 12월 20일자 법률 제2007-1787호는 법의 간소화와 관련한 것(la loi n°2007-1787 du 20 décembre 2007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으로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의 목적(제1조¹⁸⁾)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참석자 범위 확대(제2조)
- 개인회생 절차의 간소화(제6조)
- 그 밖에 결혼 전 상대방의 건강에 관한 혼전증명서의 폐지, 출생 후 부과되는 신체검사에 관한 절차의 축소, 재산 상속에 관한 세무신고 접수증 교부의 폐지(제8조)
- 특수전문공증인에 대한 독점적 권한 부여(제9조)
- 기업의 의무로서 세금수납기관에 직업훈련세(taxe d'apprentissage)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다음 해 3월 1일 이전에 그 당해 부족액을 추가하도록 부과(제12조)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완화, 지자체 내부기능의 간소화(제13조)
- 협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물의 무상 점유 또는 이용 허용(제18조)
- 유흥업소에 대하여 문화적인 장소 및 학교와 같은 다른 보호건축물과 최소 이격거리 산정의 원칙을 개정(제24조)
-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영상(화상) 통신의 방식으로 직접 연결된 방청실에서 일반인에게 재판의 방청 허용(제25조)

18) 이 법은 행정관청은 관련 직원의 요청에 따라 직책상 모든 불법 또는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이 규칙을 공고한 때부터 존재하였거나 공시일에 이전 법의 주변 상황 또는 현실로부터 기인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규정을 단호하게 폐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천명한다.

Ⅲ. 제2차 간소화 법률(2009년 5월 12일자 법률)

2009년 5월 12일자 법률 제2009-526호는 권리의 간소화 및 명확한 규정, 절차의 완화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한다(la loi du 2009-526 du 12 mai 2009 de simplification et de clarification du droit et d'allègement des procédures).

이 법률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즉 ① 시민과 행정사용자를 위한 간소화 조치, ② 기업 및 직업인을 위한 간소화 조치, ③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서비스에 관한 간소화 조치, ④ 형사 분야에 있어서의 권리의 명확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 중 “기업의 행정”에 관한 조치로서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임금노동자와의 합의에 따라 급여지급 명세서의 비물질화(전자화) 구현(제26조)
- 50인 이상의 임금노동자 기업에 의해 작성된 경제보고서를 노동감독국에 제출할 의무 규정의 폐지(제27조)
- 후임자 선출까지 노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능 유지(제29조)
- 사안과약을 위해 역량 있는 노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이관된 사안의 반송(제30조)
- 노사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원인 피고용자의 급여를 고용주에게 환급 신청하는 조건에 대해 노동법의 적용(제31조)
- 비영리기업위원회에 대한 회계전문가의 지원(제32조)
- 모든 운송회사에 대한 노동법 제4권 적용(제33조)
- 기업 연수자 보호제도의 개선(제34조)
-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및 고용주에게 전리방사선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제36조)

- 노동법의 중복 규정 삭제(제38조)
- 생계 수단이 없는 유랑자 또는 사람의 지도 하에 어린이를 방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제40조)
- 노조대표가 체결한 기업의 협약에 대해 투표를 통해 승인할 권한을 차기 선거까지 연장(제42조)
- 노조 및 직업기관의 회계자료와 관련한 일부 의무규정의 시행시기 정렬(제43조)
- 「연금법」에 근거하여 제3자를 위한 특정한 증액의 압류 금지(제44조)
- 삽화가의 보충퇴직연금의 재정 조달(제45조)
- 유럽공동체 회사의 신설을 위한 합병의 합법성에 대한 회계감사인사의 사명과 부적합성(제46조)
- 상업도시계획과 관련한 조항의 명확한 규정(제47조)
- 에너지망의 정보 파악을 위한 단일창구의 신설(제48조)
- 농업고용주 및 흥행공연 활동종사자를 위한 급여의 일부 신고제도 간소화 및 농업종사자 지원금 지급절차의 단순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업사회복지 분담금위원회의 폐지(제51조)
- 1945년 이전에 직업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한 외국인 의사 및 조산원에 대한 허가규정의 폐지(제52조)
- 정형의사 및 지압사 자격인정에 대한 규정의 확대(제53조)
- “전문직업사이트”에 대한 정의의 간소화(제54조)
- 공화국 검사의 소비분야에 있어서 감정전문가를 지명할 가능성의 일반화(제56조)
- 관세사의 직업 수행을 위한 신임장 이중발급의 폐지(제57조)
- 보세물류창고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통용되지 않는 규정의 폐지(제58조)

- 보세물류창고 화물의 보관기간과 관련한 관세법 규정의 개정(제 59조)
- 세금 및 공공요금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소송의 제소기간 조정(제60조)
- 관세의 조정 및 감정에 관한 소송절차의 현대화(제61조)
- 원산지 및 품질확인에 관한 명확한 규정(제63조)
- 포도재배 양조시장의 공동기구에 관한 2008년 4월 29일자 위원회 규칙 제479/2008호에 프랑스법 적용
- “쌩떼밀리옹 그랑 크뤼(Saint-Emilion grand cru)”에 대한 포도주 원산지 표시 등급지정의 연기(제65조)
- 수의학 약품시장 설치허가에 대한 개정절차의 단순화(제67조)
- 국세청 및 공인회계청이 수행하는 사명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 지침을 통해 수정하기 위한 입법 가능성(제68조)
- 동일한 꼬뮌 지역에서 담배판매소의 이전과 관련한 규정의 개선(제70조)
- “기업의 일자리서비스”의 시행(제74조)
- 중앙사회복지기구(ACOSS)의 중재, 사회복지분담금 및 가족수당 징수연합회(URSSAF)의 대항력, 사회복지에 관한 법의 남용에 대해 규정하고, 비신고 노동에 대한 분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단체 내 부차적이고 연대적인 책임에 대한 개념의 정의(제75조)
- 유한책임회사(SARL) 및 자유활동기업의 공동경영자 개념의 규정, 주식을 통한 자유활동기업 사장 및 대표, 은행의 협력회사 사장의 총괄적 체제 등 제휴에 대한 규정(제76조)
- 공동명칭을 가진 회사의 형태로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담배판매소 운영 가능성(제77조)
- 노동감독국 업무의 통합을 위해 「농촌법」, 「사회복지법」 및 「노동법」의 법률 부분을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제78조)

IV. 제3차 간소화 법률(2011년 5월 17일자 법률)

2011년 5월 17일자 법률 제2011-525호는 법률의 간소화 및 질을 개선하고자 제정되었다(la loi n° 2011-525) du 17 mai 2011 sur la qualité et la simplification du droit).

이 법은 크게 ① 개인 및 기업과 관련한 간소화 대책, ② 기업의 권한과 관련한 규정, ③ 형벌 규정의 간소화 및 명확한 규정, ④ 기타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행정과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개인 및 기업과 관련한 간소화 대책

- 수도사용료 청구서의 비정상적 변동에 대한 사용자 보호(제2조)
-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거래 관리(제3조)
- 행정부간 데이터자료의 직접 공개(제4조)
- 형식상 하자와 관련한 청구의 조정(제6조)
- 흥행공연 부문의 단체협약의 확대(제8조)
- 활동연대소득(RSA)의 수혜자에게 임대계약 해지예고 기간 축소(제12조)
- 정부의 공적 기능에 따라 의무적인 사전 행정청구 시행(제14조)
- 사후 결혼이 승인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제19조)
- 사전(예비) 계약 시 서명인 간 대우의 차이 삭제(제22조)
- 정비공장에 버려진 차량의 폐기 판명기간의 축소 및 이륜 또는 삼륜 오토바이 및 사륜 모터 자전거에 대한 확대 적용(제29조)
- 납(pb)과 관련한 진단 및 감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간소화(제38조)
- 실업보험 분담금 및 임금노동자 채권보험운영협회(AGS) 분담금의 징수 전환(제41조)

- 최초 3년 이상의 부모양육휴가 합의 가능성(제42조)
- 단체나 협회의 급여수표로 지불되는 휴가에 대한 일반규정의 적용(제43조)
- 불성실한 상거래와 관련한 유럽공동체법의 적법성 확인(제45조)
- 원거리 판매 기업에 대한 세일 시기(제47조)
- 일반 상점 개업에 대한 경영지도(제48조)
- 특정기간 고용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의료 부적합(제49조)

2. 기업의 관할권과 관련한 규정

- 현실적인 세무제도 하에서 회사의 회계규정의 간소화(제55조)
- 비영리적 이득을 얻는 자의 직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등록 규정의 단순화(제56조)
- 매우 간소화된 회계처리 감독을 받는 계열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회사에 현실적 조세 간소화의 확대(제57조)
- 회사 및 회사의 대리인 또는 주주 간에 체결된 협약의 공개(제58조)
- 재산목록 장부(livre d'inventaire)의 폐지(제59조)
- 무근로자 또는 그룹의 감독을 받는 주식회사의 자본 증액절차의 간소화(제60조)
- 우선인수권의 폐지와 함께 주식회사의 자본 증액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개입 방식(제61조)
- 회계감사인이 비지속성 경고절차를 수정할 권한과 증가된 재정적 보호절차 정비(제62조)
- 서비스 영업소의 임대료에 대한 새로운 분기별 지표에 따른 협약의 대항력(제63조)
- 회사의 병합 또는 분할에 있어서 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2009년 9월 16일자 지침(제2009/109/CE)의 개정(제64조)

- 기자에 대하여 저작권 명목으로 징수되는 보충수당(제65조)
- 온라인 신문출판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확대(제66조)

V. 제4차 간소화 법률(2012년 3월 22일자 법률)

소위 “바르스만Ⅱ법”이라 불리는 제4차 간소화 법률은 법의 간소화 및 행정절차의 완화를 위한 것이다(*la loi n° 2012-387 du 22 mars 2012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è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기업의 발전과 고용에 대한 장애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국가의 경제력, 즉 기업, 특히 증가하는 규정과 행정절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규범의 간소화를 지향한다. 때문에 이 법은 상법, 기업법, 사회보장법, 세법 및 주식시장법에 관하여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의 전반부는 기업행정에 보다 직접적인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후반부는 기타의 다양한 분야(농업, 전문직, 운송법, 관광법, 미디어법, 임대법, 시민단체법 등)에 관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를 기업행정으로 한정하였기에, 이하에서는 이 법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기업행정에 관한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이 법의 기업행정에 관한 규정은 크게 ① 기업에 관한 규정의 간소화, ② 기업의 사회보장 간소화, ③ 기업의 발전지원에 관한 규정, ④ 기업의 부정척결에 관한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전체적인 체계와 함께 주요 규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바르스만 법안의 골격 -

제 1 장 기업 관련 규정에 대한 간소화

- 제 1 절 기업의 범규에 관한 간소화(제1조~제32조)
- 제 2 절 기업의 사회보장 관련(제33조~제56조)
- 제 3 절 기업의 개발지원(제57조~제65조)
- 제 4 절 절차간소화(제66조~제70조)
- 제 5 절 사해행위 퇴치에 관한 규정의 간소화(제71조~제73조)

제 2 장 일정 부문의 규정에 대한 간소화

- 제 1 절 농업분야 규정의 간소화(제74조~제87조)
- 제 2 절 특정 규제대상 직업체계의 완화(제88조~제90조)
- 제 3 절 운송분야 규정의 간소화(제91조~제93조)
- 제 4 절 관광분야 규정의 간소화(제94조~제97조)
- 제 5 절 언론분야 규정의 간소화(제98조~102조)
- 제 6 절 주택, 건설, 토지정비분야 규정의 간소화(제103조~111조)
- 제 7 절 시행 체계에 관한 규정

제 3 장 보 칙

1. 기업에 대한 규정의 간소화

- 상인등록, 협동조합을 통한 소매상인의 영업권 전매 및 소매상인의 공동기업 구성(제1조)
- 상업임대차의 계약해지일에 대한 명확화(제2조)
- 영업양도 조건의 완화(제3조)
- 영업권, 상업임대차 및 상업용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포뮌)의 선매권(先買權) 개선(제4, 5조)
- 주식회사(SA)의 임원 중복허가를 통한 경영임무체계의 현대화(제6조)

-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증식에 있어 주주의 만장일치에 의한 출자 감독관 임명(제7조)
- 주식회사의 일정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감독관의 보고서 제출의 무 면제(제8조)
- 법원서기국에 대한 운영보고서 및 회계자료 사본 제출의무 폐지, 이메일을 통한 연간 회계자료 제출 권장(제9조)
- 유한책임회사(SARL)의 증자체계를 주식회사의 증자체계로 조정(제10조)
- 비상장기업의 최근 주주총회 투표권 변동이 없을 경우 투표권 공개 의무 삭제(제11조)
- 자회사의 지속적 발전 참여에 관한 정보제공 방식의 간소화(제12조)
- 주식회사의 주식보유량에 따른 특별주주총회 통지조건 완화(제13조)
- 비상장 중소기업의 임직원에게 대한 무상주 제공 가능성 확대 및 완화(제14조)
- 주식시장 Alternext에서 주식을 매매수할 권리 확대(제15조)
- 다양한 법적 형태의 기업 간의 부분적 출자를 회사분할제도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제16조)
-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메카니즘의 개선(제17조)
- 특정 회계, 기명 및 청산정보의 공개명령,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청산인의 자격박탈 허용(제18조)
- 기업경영에 관련한 특정불법행위에 적용되는 형법의 일관성 강화(제19조)
- 일반법 상의 시효를 침부된 주식을 통한 기업의 증자에 대한 임의적 무효(제20조)

제 2 장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정책 동향

-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업그룹과 유럽기업그룹 명칭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정(제22조)
- 채권발행 단체 및 부동산 민간투자 기업에 대한 회사법 개선(제23조)
- 상장기업의 연례 정보자료집 발간의무 폐지(제24조)
- 타기업 주식보유액의 법정신고제도 개선(이익의 현금결제 원칙 확대)(제25조)
- 생산노동자협동조합 및 공공이익협동조합의 경영 현대화(제26조)
-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벌금의 대상이 되는 허위기재 삭제 명령(제27조)
- 채권자총회결정에 속하는 기업보호 또는 회복계획에서 채권자 간의 종속계약과 지주회사의 재정보호 촉진제도 접근 고려(제28조)
- 자유직 기업(SEL)의 사회보장에 대한 평가(제29조)
- 회계감독관이 작성한 문서전달 규정의 간소화(제30조)
- 직업총람에서 허가 및 등록 절차의 연관성 명확화(제31조)
- 미성년 기업가의 지위를 최소 연령을 16세로 규정(제32조)

2. 기업의 사회보장에 대한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교통 지원금 인상일 지정(제33조)
- 사회보장 기명신고제(DSN)의 시행(제35조)
- 사회보험료와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에 준거한 사회보험료의 징수 합의절차 간소화 및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기금의 임원 임기 연장(제36조)
- 초과 근무시간 명목으로 지불되는 고용주 부담금의 감소 결정에 따른 계수의 명칭 통일화(제37조)
- 사회보장 규정의 재심절차 개발(제38, 39조)

- 이미 감사를 거쳐 적법성이 인정된 기간 및 작업장에 대한 새로운 근로감독 금지(제40조)
- 사회보장 보험료 지불신고와 고용 전 신고 시 금액 수정(제41, 42조)
- 노동법의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계수 통일화(제43조)
- 비전문 근로자의 전국 최저임금 및 최저 시급 준수를 위한 급여협상(제44조)
- 고용계약의 변동 없이 단체협약의 범주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제45조)
- 원격(재택)근무자의 지위에 대한 법적 정의(제46조)
- 직업 외적인 신체적 부적격으로 인한 해고 통보의 경우 통보 즉시 고용계약의 실질적인 해지 인정(제47조)
- 노동법에서 만 하루(24시간)의 개념을 근무일의 개념으로 대체(제48조)
- 공휴일 조업중지의 경우에도 이전 고용근로자의 급여 보장(제49조)
- 유급휴가권의 자동적 개시(제50조)
- 급여명세서의 간소화(제51조)
- 급여예금 최고납부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 통일(제52조)
- 초소형기업(TPE)에 대한 근로안전 및 위생 관련 위험평가방식의 적용(제53조)
- 농약생산 기계의 개발 및 제작에 있어서 환경, 재산 및 동물보호 고려(제54조)
- 근로자의 복귀 시 전직 또는 동일 직위 부여(제56조)

3. 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규정

- 직업노동조합기구, 직원 또는 고용자 단체의 회계보증 의무 규정(제57조)

제 2 장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정책 동향

- 계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회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회계 의무규정의 단순화(제58조)
- 관세 절차의 단순화 및 현대화(제61조)
- 우체국 소인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제65조)
- 상업송금에서 발생하는 급여연체 방지에 관한 2011년2월16일 유럽연합지침 (n°2011/7/UE) 의 국내법 전환과 연체급여에 대한 보상금 적용(제121조)

4. 부정행위의 척결과 관련된 규정의 단순화

- 기업경영 금지 대상자에 대한 국가 관리파일의 신설(제71조)
- 자금세탁방지 조치(제72조)
- 송금의심의 경우 정보 교환(제73조)

제 3 장 프랑스의 기업행정 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제 1 절 바르스만법의 입법취지

바르스만 의원은 이미 2007년과 2009년에 관련 법률을 두 건 발의하여 의회를 통과시킨 바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에 들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관련법의 정비에 나서게 된다. 당시 정부는 성장과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특히 중소기업) 및 수공업자, 농업종사자, 자유직종 등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한 제한들”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¹⁹⁾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문제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바르스만 의원에게 관련법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그리하여 2011년 1월 25일에²⁰⁾ 공식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바르스만 의원은 각 지역 탐방, 관련 정부부처 대표들과의 회합 그리고 약 70회에 가까운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이 문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 동안의 자신의 입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나간다.²¹⁾ 이것이 법의 질(qualité)에 대한 간소화 및 개선에 관한 법률(2011년 5월 17일자 법률 제2011-525호)로서 소위 “바르스만 I 법”으로 불린다.

19) Lettre de miss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icolas Sarkozy) à Jean-Luc Warsmann, 17 janvier 2011, in : Warsmann, Jean-Luc, La simplification du droit au service de la croissance et de l'emploi,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juillet 2011, pp.3-4.

20) Décret du 25 janvier 2011 chargeant un député d'une mission temporaire.

21) 그 해 11월 6일 바르스만 의원은 대통령 앞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총 422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프랑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280여 개의 권장사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인 2011년 4월 29일 중소기업 담당 국무위원인 르페브르(Frédéric Lefebvre)의 주재로 「간소화 회의」(Assises de la simplification)가 열렸으며 바르스만 의원 등 정계와 재계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자리에서 80개의 조치를 담은 정책 기획이 발표되기도 했다.²²⁾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 바르스만 의원은 7월 28일 행정절차 간소화법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즉, 바르스만은 바르스만 I 법이 채택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7월 초 성장 및 고용, 서비스에 관한 법의 간소화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공화국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새롭게 제출된 이 법에 관하여는 몇 차례의 활발한 논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의회가 채택하면서 2012년 3월 22일자 법률 제 2102-387호로서 “법의 간소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것이 소위 바르스만 II 법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보는 프랑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의회의 관심이 일치하고 있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바르스만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프랑스는 그 영토에 적용될 규범의 관리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²³⁾ 즉, 법의 간소화는 단순히 관계 법령의 조문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다 더 이해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게 하는 형식과 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르스만 의원 법안이 주로 관심을 둔 대상이 기업이었음은 부연의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 중 특히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자 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이 복잡해질수록 기업이 받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법규 환경의 변화에 비교적

22) [http : //www.dgcis.redressement-productif.gouv.fr/](http://www.dgcis.redressement-productif.gouv.fr/)

23) Assemblée nationale, 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é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présentée par M. Jean-Luc Warsmann, le 28 juillet 2011, XIIIe législature, n° 3706, p.3.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법규·절차의 확산으로 인해 때로는 기능장애를 겪기도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의 경제에서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럽연합의 기준상 중소기업은 근로자 250인 미만, 매출액 5천만 유로²⁴⁾ 미만의 기업을 말하는데,²⁵⁾ 이 기준에 의할 때, 프랑스 본토에만 2천7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프랑스 경제(특히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따라서 프랑스의 경제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령 규정을 완화해 주는 것이 프랑스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 판단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문서의 준비와 제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프랑스 전체 국내총생산의 3%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었는데, 일정한 수의 행정상 또는 법규상 부담을 덜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그것이다.²⁷⁾

요컨대, 바르스만II법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일상 업무 간소화, 부담이 되는 행정비용 절감, 기업-공권력 관계에 신뢰 부여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목적과 목적을 추구하는 주된 수단으로 도입된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법안 제출 당시 환율 기준 약 76,976,500,000원.

25) 참고로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가목),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미만(라목)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정하고 있다.

26) 참고로 2009년도 기준 한국의 중소기업의 수는 3,066,484개, 그 종사자 수는 11,751,022명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1년 중소기업 현황, 2011. 4., p.34.

27) Proposition de loi, 전체 법안(XIIIe législature, n° 3706), p.4; Assemblée nationale, n° 11 [3] A.N. (C.R.), Compte rendu intégral, 3e séance du mardi 31 janvier 2012, p.574, 바르스만 의원의 발언.

<표 - 바르스만법의 목적과 추진 도구>

목 적	추진도구
기업의 일상 업무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보안캐비닛 구축 - 급여명세서의 간소화 - 기명식 회사신고제 마련 - 중복문서 제출의무 폐기
행정비용의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경보고서에서 불필요한 기재 부분 제거 - 공공시장의 형식화된 절차 제한선 상향 - 공공통계의 간소화 - 환경부문의 여러 절차 병합 - 농촌임대차 등록의무의 종결
기업-공권력 관계에 신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문제의 사전적 답변조치 확대 - 기업법의 형사적 처벌을 민사절차로 대체 - 조서작성에 앞서 노동검열 시 적발된 위반사항을 기업주에 체계적으로 전달

제 2 절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바르스만법은 2011년 법안이 제출된 이래 수차례 법률안이 부결되는 등 많은 논의가 수반되었다. 그 논의의 중심은 이 법의 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 내지 절차의 연관성 내지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입법과정 중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이 법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입법과정 중에서 특히 비판적 입장(상원)의 중요 논의사항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이 법의 본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²⁸⁾

28) 의회의 입법과정 상의 논의에 관하여는 홍기원, 앞의 워크숍 자료집, 49면 이하.

<표 - 2012년 행정절차간소화법 입법과정 개요>

2011년 7월 28일	바르스만 의원 법률안 제출
2011년 10월 18일	국회 1차 독회에서 법률안 채택
2012년 1월 10일	상원 1차 독회에서 법률안 부결
2012년 1월 31일	국회 2차 독회에서 법률안 채택
2012년 2월 20일	상원 2차 독회에서 법률안 부결
2012년 2월 29일	국회 최종 독회에서 법률안 채택
2012년 3월 15일	헌법위원회 일부합헌 결정
2013년 3월 14일	정부 작성 법률실행보고서 의회에 제출

우선, 바르스만 의원의 법안은 국회사무처(Bureau de l'Assemblée générale)에 2011년 7월 28일 제출되었으며, 국회의장은 이를 행정소송 법전 제L.112-1조에 따라 해당 법안의 검토를 국사원에 위탁하였고, 국사원 내에서는 5개 부서에서 10인 연구보고관의 검토를 거쳤고, 9월 19일 국사원 총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긍정적 의견(avis favorable)을 내놓았다.

다만, 국사원은 법안의 몇몇 조문에 대하여 국사원 측의 제안 내지는 고찰 등의 형식을 띠고 있을 뿐이며, 의회는 국사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았다.

I. 국회 법제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

국회 내에서 위 법안에 대한 심층검토는 2007년 12월 20일 간소화법 제출 시 공동발의자이기도 했던 에티엔느 블랑 의원²⁹⁾이 맡았고, 법제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는 2011년 9월 28일과 10월 5일 이루어졌다. 블

29) UMP 소속. 국회 법제상임위원회 위원(2002.6.26.-2007.6.19., 2007.6.27.-2012.6.19.).

랑 의원은 10월 5일자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의 간소화는 성장과 경쟁력 그리고 고용창출 등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입법은 제12대 국회 이후 추진되어 온 노력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바르스만 의원의 법안은 지금까지의 그 어느 관련 법안보다도 더욱 체계적이고 심화된 준비작업에 기하여 이루어진 결실이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야심찬” 법안이라고 평가했다.³⁰⁾

다만 법제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 ① 법안이 행정절차 간소화를 핑계로 한 “위험천만한 법”이라는 취지의 (법안의 내용에 대한) 비판³¹⁾
- ② 헌법 제40조³²⁾에 따라 이 법안의 제 규정이 議員發議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재정위원회(commission des Finances)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³³⁾

그러나 법제상임위원들의 다수는 대체로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위 두 가지의 지적 중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바르스만 위원장이 그 흠결된 검토를 추후 재정위원회

30)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 sur la proposition de loi (n° 3706) de M. Jean-Luc Warsmann,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è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par M. Étienne Blanc, 2 vol., le 5 octobre 2011, XIIIe législature, n° 3787.

31) 9월 28일 알랭 비달리(Alain Vidalies) 의원(socialiste)의 의견. 앞의 보고서(n° 3787), pp. 55-56. 비달리 의원은 이 법안의 몇몇 조항이 기업 또는 시민의 생활을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법안이 표방하는 목적과 법안의 실제 내용에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32) Article 40 : “Les propositions et amendements formulés par les membres du Parlement ne sont pas recevables lorsque leur adoption aurait pour conséquence soit une diminution des ressources publiques, soit la création ou l'aggravation d'une charge publique.”

33) 10월 5일 베르나르 로망(Bernard Roman) 의원(socialiste, républicain et citoyen)의 지적. 앞의 보고서(n° 3787), pp. 57-58.

에 회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검토는 그 후 법제상임위원회 작성의 수정법안³⁴⁾과 함께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었다.

II. 수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토의

헌법상 신속절차³⁵⁾에 따라 위 수정법안에 대한 토의를 위해 열린 본회의(10월 11일)에서도 다수 의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었으나, 이 수정법안 역시 여전히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수정법안 제2편 제3장(제72조의2)에서는 특정 차량에 대해서 총 적재중량의 한도를 5車軸에 44톤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이 수정법안 조항의 의의는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과 환경보호 양자의 가치를 조율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블랑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이러한 화물차량의 적재중량 한도의 완화는 결국 운송도로를 훼손케 할 것이고 이는 “환경에 반하는 실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³⁶⁾

또한 “간소화”라는 입법적 지향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적이 당시 “여당” 소

34) 그 주요 수정 내용은 전계 보고서(n° 3787), pp.15-18.

35) 2008년 7월 23일 헌법 개정 이후 프랑스 헌법상 법안의 제출과 국회에서의 토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6주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정부법안 중 예산안(*projet de loi de finances*), 사회보장재정(*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위기상황에 관한 법안(*projets de loi relatifs aux états de crise*) 그리고 정부가 법안에 대한 의회에서의 심의를 신속절차(*procédure accélérée*)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국회 의장단(*Conférence des Présidents*)에서 반대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다(의장단은 국회의장 1인, 부의장 6인, 상임위원회장 8인, 재무·일반경제·예산심의 위원회 일반보고위원, 유럽위원회 장, 정파별 교섭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된다).

36) 마르틴느 빌라르(*Martine Billard*) 의원(*Gauche démocrate et républicaine*)의 지적. *Compte rendu intégral*, 전계 회의록(11 octobre 2011, n° 87 A.N.), p. 6089. 빌라르 의원의 토의발언은, p. 6100.

속의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즉, 간소화가 능사는 아니므로 “우리가 단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복잡함 속에 사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과 시행령이 참작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복잡하고 다기”한데다 프랑스의 법령을 유럽의 법제와 조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간소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³⁷⁾

이에 정부측은 「상업·수공업·중소기업·관광업·서비스업·자유직종·소비 담당 국무위원」³⁸⁾을 내세워 위와 같은 지적과 비판을 “당파적 논쟁”이라고 평가절하 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는 예측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조차 이러한 위기에 빠져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 계층을 도외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³⁹⁾일 것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중론은 “경제주체에 가해지고 있는 규범과 정부입법의 질과 이해가능성, 효력 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논거에 입각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본회의의 독회에서 채택된 법안⁴⁰⁾은 이제 상원의 토의에 부쳐지게 되었다.

37) 도미니크 도르(Dominique Dord) 의원의 의견. 전계 회의록(11 octobre 2011, n° 87 A.N.), pp. 6090-6091.

38) 프레데릭 르페브르 국무위원(Frédéric Lefebvre, secrétaire d'État chargé du commerce, de l'artisanat,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u tourisme, des servic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et de la consommation)의 발언(전계 회의록, 11 octobre 2011, n° 87 A.N., pp. 6092-6095)에 앞서 빌라르 의원은 “장관명은 언제 간소화할 것이냐”고 물었다.

39) 미셸 이생두(Michel Issindou) 의원(Socialiste, radical, citoyen et divers gauche)의 비판. 전계 회의록(11 octobre 2011, n° 87 A.N.), p. 6096.

40) Assemblée nationale, Texte adopté, 18 octobre 2011, XIIIe législature, n° 750.

Ⅲ. 국회 채택법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토의

제출된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중요한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표결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채택되었지만, 상원의 토의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비판이 잇따랐는데, 그 중 주요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제상임위원회의 의견

상원의 법제상임위원회(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égislation, du suffrage universel, du Règlement et d'administration générale)의 보고의원으로서 지명된 장-피에르 미셸 상원의원은 법 간소화의 작업은 분명 필요한 것임을 전제하면서, 다만 위 법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즉, 상원 법제상임위원회의 검토에 따르면, 법안 중 진정한 의미에서의 간소화의 성격을 지닌 조문은 5개 중 1개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규정들은 오히려 모두 기존 법령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규정들이라는 것이다.⁴¹⁾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의도 신속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원래 바르스만 의원 초안에서 93개 조문이던 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어 상원의 심의로 넘겨졌을 때에는 153개조로 증가한 사정에 비추어 입법 과정이 간소화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2. 재정위원회의 의견

이 법안에 보충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발언대에 선 4개 위원회의 보고의원들의 의견도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즉, 재정위원회의 보

41) Jean-Pierre Michel (groupe socialiste et apparentés). 미셸 상원의원의 발언은 Sénat,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 du mardi 10 janvier 2012, n° 1 S. (C.R.), pp. 32-34.

고의원이었다던 니콜 브리크 의원은 위 법안은 이른바 “바르스만Ⅱ법의 법안”이 아니라 “바르스만Ⅳ법의 법안 ”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2007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반복되어 발의된 간소화 법안의 再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법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일정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불만을 표시했다.⁴²⁾

이는 상원에서의 의사일정을 年初로 잡음으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위원회별 검토를 12월 중순, 즉 본격적인 예산심의 기간 중에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급박”하고 “즉흥”적인 상황 하에서 법안을 충실하게 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었던 것이다.

3. 사회문제상임위원회의 의견

한편, 사회문제상임위원회의 보고의원은 당시 여당(UMP) 소속 상원 의원들의 의뢰에 따라 법안에 대한 연구보고를 수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정당의 동료 의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극도로 다양하고 게다가 잡다하기까지 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충실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議事處理가 되도록 일정상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어떤 조문들은 매우 사소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떤 조문들은 근로자의 권리 또는 보건 등의 근거를 의문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전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선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⁴³⁾

42) 니콜 브리크(Nicole Bricq) 상원의원(groupe socialiste et apparentés). 현 무역부장관. 브리크 상원의원의 발언은 *Compte rendu intégral*, 전계 회의록(10 janvier 2012, n° 1 S.), pp. 34-35.

43) 카트린느 프로카시아(Catherine Procaccia) 상원의원(UMP). 발언은 *Compte rendu intégral*, 전계 회의록(10 janvier 2012, n° 1 S.), pp. 35-37.

4. 문화·교육·통신상임위원회의 의견

문화·교육·통신상임위원회도 2011년 12월 21일 앞에서 언급한 법제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유사하게 이 법안 전체의 검토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원에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보고의원 역시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첫 번째 이유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신속절차 하에서 단축된 의사일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위원회가 검토를 맡은 조문들에 관련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며, 두 번째 이유는 법안의 몇몇 조문들의 경우 순수한 의미에서의 간소화 작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오히려 “의원발의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정부가 특정 경제활동 분야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들을 통과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 정부들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근거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⁴⁴⁾

5. 경제 및 지속적 발전, 토지정비 상임위원회의 의견

마지막으로, 경제 및 지속적 발전, 토지정비 상임위원회의 보고의원 역시 이 법안이 이른바 간소화를 표방하는 것에 비하여 너무 다양한 사항들을 체계 없이 망라하고 있어서 마치 “잡동사니 창고”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⁴⁵⁾

이처럼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결국 상원의사규칙 제 44조 제3항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심의를 더 이상 진행

44) 클로드 도메젤(Claude Domeizel) 상원의원(groupe socialiste et apparentés). 발언은 *Compte rendu intégral*, 전계 회의록(10 janvier 2012, n° 1 S.), pp.37-38.

45) 마르시알 부르퀼(Martial Bourquin) 상원의원(groupe socialiste et apparentés)과 에르베 모레(Hervé Maurey) 상원의원(groupe Union des Démocrates et Indépendants). 발언은 *Compte rendu intégral*, 전계 회의록(10 janvier 2012, n° 1 S.), pp.38-42.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어 상원의 1차 독회에서 폐기되기에 이른다.⁴⁶⁾

이 후 국회에서의 2차 독회(1월 31일)⁴⁷⁾ 결과 2차 수정법안이 채택⁴⁸⁾되었고 그리하여 다시 상원의 2차 독회(2월 20일)⁴⁹⁾에 부의되었으나, 1차 독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차 폐기되었다.⁵⁰⁾

남은 절차는 국회에서의 최종독회(lecture définitive, 2월 29일)⁵¹⁾뿐이었는데, 이 날 최종표결에서 법안은 결국 채택되었다.⁵²⁾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부르켄 상원의원 등과 이생두 국회의원 등은 헌법 제61조 제2항⁵³⁾에 근거하여 헌법위원회에 이 법률의 위헌심사를 청구하기에 이른다.

IV. 헌법위원회의 결정

바르스만이 제안한 법안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소한 청구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결정의 요점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⁴⁾

46) Sénat, *Texte rejeté*, 10 janvier 2012, n° 43.

47) Assemblée nationale, *Compte rendu intégral*, 3e séance du mardi 31 janvier 2012, n° 11 [3] A.N. (C.R.)

48) Assemblée nationale, *Texte adopté*, 31 janvier 2012, XIIIe législature, n° 836.

49) Sénat,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 du lundi 20 février 2012, n° 21 S. (C.R.)

50) Sénat, *Texte rejeté*, 20 février 2012, n° 77.

51) Assemblée nationale,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s du mercredi 29 février 2012, n° 29 A.N. (C.R.)

52) Assemblée nationale, *Texte adopté*, 29 février 2012, XIIIe législature, n° 871.

53) Article 61, deuxième alinéa : “Aux mêmes fins, les lois peuvent être déférées au Conseil constitutionnel, avant leur promulgation,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le Président du Sénat ou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54)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n° 2012-649 DC du 15 mars 2012*.

쟁 점	청구인 주장	헌법위원회의 결정
① 신속절차로 인한 법안의 “진지한” 토의 침해 여부	이 법안에 대해 신속 절차를 취한 것은 의회에서의 토의의 진지성과 명료성에 침해를 가져왔다.	신속절차는 헌법 제45조 제2항이 보장하는 것이고, 그 어떤 규정도 정부에게 신속절차를 취해야 하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가 의회 심의의 명료성과 진지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의 이해가능성 및 접근가능성 훼손 여부	당해 법률은 법의 이해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도외시켰다.	청구인들은 당해 법률이 그 제 규정의 복잡성과 그 이질적 성격으로 인해 법률의 이해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입법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분명하나, 어떤 헌법상 요건도 정부법안이나 의원법안 등에 대해 그러한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법률의 복잡성이나 그 제조항의 이질성 자체가 법률의 접근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해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 법률 자체의 어떤 조항도 그 자체로 이러한 목적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률제정사항과 시행령제정사항의 구분 여부	당해 법률의 조문 중 법률영역에 속하지 않는 조항들, 특히 제92조(화물차량의 적재중량 한도에 관한 규정)는 시행령 영역에서 규율해야 할 사항이다.	헌법 제34조와 제37조 제1항이 법률영역과 시행령 영역을 구분하고 있고, 제41조와 제37조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부는 법률 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시행령 영역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법률에 포함된 시행령적 성격의 조항은 위

쟁 점	청구인 주장	헌법위원회의 결정
		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
④ 근로시간의 재조정	법 제45조(8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니라 규정한 조항)는 위헌이다.	1946년 헌법 전문 제8항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해 근로조건을 단체적 결정과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 당해 법률에서 단기간 중 근로시간의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입법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업 생산활동 리듬의 변화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근로시간 획정에 관한 단체협약을 강화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법률 제4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⑤ 법안 심의 중 추가 삽입된 조항의 관련성	법률안 원안과 법안 심의 중에 삽입된 제 조항 간에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	헌법 제45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제출 또는 이송된 법안과 간접적인 연관이라도 있는 개정 조항은 1차 독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의 몇몇 조항, 예를 들어 제31조 제Ⅲ단은 정부가 명령의 방식으로 수공업 분야의 조직에 관한 제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조항, 이러한 분야의 기업의 지위, 수공업자의 재산, 직업교육 및 자격 취득 그리고 그 생산물이나 서비스의 질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 행정절차를 수공업 직종의 변화에 맞추어 간소화하려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제 3 절 바르스만법 주요 내용의 분석

바르스만법이 공포되기 전, 르페브르 중소기업 담당 차관은 2012년 3월 19일 “과도한 문서업무 감소위원회”를 창설했다. 이 위원회는 기업인과 전문가 대표로 구성되며 법률 및 절차간소화를 위한 새로운 제안서 작성 및 집행된 정책의 평가와 감독을 임무로 한다.

또한 바르스만법이 제정한 내용 중 25가지의 주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르페브르 차관은 이러한 간소화 조치의 실천으로 인한 기업 이익은 연간 1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실제로 정책 시행 이후 국제경쟁리포트가 평가한 국가 경쟁력 분야에서 프랑스가 11단계 상승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⁵⁵⁾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을 추진하였던 일부 조치들을 위주로 간소화법 제정 이전에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개선조치로서의 간소화법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⁵⁶⁾

I. 급여명세서의 간소화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급여명세서의 복잡성과 난독성	보다 쉽게 작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간소화

급여명세서(bulletin de paie)의 구성은 기업인들조차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매년 약 2,400만 부의 문서로 제조되는 이 급

55) Lefebvre Frédéric et Warsmann Jean-Luc, Loi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è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1er mars 2001, p. 6.

56) ibid., pp. 11~39.

여명세서는 복잡하고 중복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최대 30줄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항목에는 숫자가 뺄뺄하게 적혀 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급여명세서의 난독성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준다.

정부는 법적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용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되 급여명세서에 작성된 줄(line)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제51조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단계를 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 부담금의 항목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
- 실업수당, 퇴직연금 및 공제부담금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

이러한 2단계 간소화의 실시는 복지제휴기관의 입장을 존중하도록 배려하여 정해졌다. 즉, 위 규정이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 상의 규정 내용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추진하는 조치들과 관련 사회보호제도 간의 조화가 필요할 것인데, 이는 이러한 조치들을 관리하는 복지제휴기관의 주도로 2015년부터 협약이 추진될 것이다.

II.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일 창구화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현재 기업들은 동일한 정보를 여러 행정기관에 반복해서 제출해야 함	‘디지털 보안캐비닛’의 신설 및 행정기관의 용어 및 데이터를 통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신원·재정·회사 데이터의 공통기반을 기업에 요구한다. 이 경우 많은 절차 속에서 유사한 개념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각 기관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보가 더 복잡해 지기도 한다.

바르스만법 제62조 상의 ‘디지털 보안캐비닛’(armoire sécurisée numérique) 내지 소위 “전자금고”는 이용자가 제작한 ‘정보의 단일 전달원칙’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일 창구로서 기존의 다수의 행정기관에 중복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기업정보를 안전장치가 확보된 전자금고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중복 업무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법적 지위, 세무 및 사회보장 정보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이러한 단일창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간소화되거나 미리 기재된 신고를 하게 되어, 현행 절차의 복잡성에 기인한 오류 축소관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 정보에 대하여 공유가 가능하도록 행정기관들 간에 신뢰받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며, 용어에 가해진 미세조정은 공공의 영역 내에서 상호화(mutualisées)될 수 있는 정보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복지문제에 대한 사전적 답변조치의 개선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제한적이고 복잡한 적용조건으로 복지문제 사전답변의 효율성 저하	복지문제 사전답변의 확대 및 명료화

기업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복지문제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는 경우, 사전답변의 적용범위가 충분히 광범하지 않은 탓에 어떤 주제는 상담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이 간혹 지나치게 길기도 하며, 사전답변 제출이 복잡하여 간소화 및 보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은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회신절차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 난관 내지 장애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바르스만법이 제38조와 제39조에 걸쳐 도입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복지문제 사전답변의 범위를 특별기준 및 비율이 적용되는 고용주나 독립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부담금 산정규칙, 제3자에 지불되는 사회보장급여, 대체인력의 소득에 대한 사회복지부담금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복지법 분야로 확대하여 적용
- 다양한 회신기한을 전반적인 회신기한에 맞춰 명확하게 제한. 다만 이 기간은 별도의 법령으로 결정

IV. 자유직업의 정의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자유직업의 정의 부재	모든 자유직업에 적용되는 법적 단일정의를 채택하여 간소화 및 조정

오래 전부터 자유직업 대표는 국가적으로나 유럽 차원에서 단일한 정의가 없었다. 따라서 자유직업의 범주는 채택된 법적(규제대상 직업 vs. 비규제대상 직업) 또는 사회학적(업종별 분류 : 의료·의료보조 부문, 법률 직종, 기술·생활환경 부문 등)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같은 개념의 분산은 자유직업 부문의 다양성과 풍부함, 경제적 비중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직업(professions libérales)은 현실적으로 종사인원이 70만 이상으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 특별규정을 따르는 공공·정부관리
- 전문성을 갖는 조직적이고 규제된 직업(변호사, 건축가, 특정 의료직 등)

- 접근이 규제된 직업(발음교정사 또는 작업요법사)
- 최근에 생긴 까닭에 인원수가 제한된 매우 다양한 신종업종(연수, 코치 등)

자유직업에 대한 정의 채택은 2012년 4월 12일 프랑스 대통령이 자원하여 직접 공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2011년 10월 자유직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도출된 법안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2011년 12월 5일 자유직업 국가심의회회의 만장일치를 통하여 바르스만법 제2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문화된 것이다.

동 조에 의하면, 자유직업이라 함은 “고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직업윤리를 존중하면서 다른 독립적 근로 방식에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지식적, 기술적 또는 적절한 직업적 자격 수행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일상에서 독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되어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던 직업군을 법적으로 명료하는 것은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확장일로에 있는 프랑스 경제부문의 구조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V. 장인(匠人)의 새로운 정의

기업인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조치
직업등록부에 등록된 직업인들의 직능이 복잡하고 충분히 가치화되지 않음	직업등록부에 등록된 직업인 모두에게 장인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갖춘 장인’ 목록 신설

그동안 수공업자, 즉 ‘장인’(artisan)은 직업명부(répertoire des métiers)에 등록한다고 해서 저절로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장인으로서 법적 자격을 얻으려면 상공회의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위, 수료증 또는 직업경력을 별도로 증명해야 했다. 이러한 차별은 수공업 부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격증을 갖춘 장인의 전문성에 가치를 부여해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하여 바르스만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이제부터 직업명부에 등록된 수공업자 모두에게 다른 조건 없이 장인자격이 부여되어 실제로 종사하는 업종과 관련된 자격증(학위 또는 수료증)을 가진 소지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한’ 장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새로운 장인의 직업군을 분류하는 것은 직업을 행사하는 자 뿐 아니라 그의 소비자에게도 앞으로 종사업종에 꼭 필요한 자격 및 능력을 모두 갖춘 직업인인지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가 되었다.

VI. 체불기한의 제한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계절색이 짙은 특정부문은 법적 지급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	이들 부문에 새로운 예외 합의 허용

2008년 8월 4일자 경제현대화법(이하 LME)은 제21조 이하에서 지불기한(délais de paiement)을 월말 기준 45일 또는 영수증 발행일로부터 60일로 기한을 정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특정 부문의 요구로 위 법은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기된 기한을 연장하도록 허용하는 직업인 간의 예외 합의를 허용했다.

프랑스 경제에서 체불기간은 2007년부터 크게 단축되었다. 이러한 체불기간의 단축은 프랑스 기업을 글로벌 위기에서 보다 잘 견디게 해주었으며, 아울러 유동자산을 중소기업으로 상당량 유입이 되도록 하

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체불기한에 대해 임시특례를 받은 어떤 제품들은 계절색이 짙어 이 법이 정한 기한을 2012년부터 바로 적용 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토목 부문의 경우, 계절에 따른 임시 지급유예의 남용은 민간 전문공사주가 지불해야 하는 월선입금을 법적 기한 내에 받아내는 데에 종종 어려움을 준다. 민간 전문공사주가 지급기한을 반복적으로 넘기는 것은 이 경제주체가 적용법의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유예의 남용으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이 부문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된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들 부문에 대해 바르스만법은 제121조에서 판매나 제공에 있어 계절색이 특히 짙은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통법 지급기한의 예외협약에 대하여 LME 차원에서 체결된 협의로 보호된 것이라는 조건 하에 허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협약은 법 시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것이어야 하며, 그 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바르스만법 제90bis조는 이러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월말 결산을 규정하는 상법 제L.441-6조를 건축 및 주택법에도 삽입하였으며, 체불이 발생한 후 15일 이후에도 지불이 되지 않으면 건설업자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VII. 최저임금 협상 개시의무 신설

현 황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직업군 고유의 협상일정 때문에 합의된 최저임금이 수개월간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직업군이 재평가된 최저임금(SMIC)을 최대한 빨리 반영하도록 임금협상에 활성화 메커니즘 구축

최저임금(이하 SMIC)은 1월에 재평가되고, 각 직업군은 보통 9월부터 협상에 들어가 4분기 또는 늦으면 다음년도 초에 타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직업군 고유의 협상 일정으로 인해 합의된 최저임금이 수개월간 SMIC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최저임금 이중관리 상황을 종결짓기 위해 바르스만법 제44조는 어느 직업군의 급여표가 SMIC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된 최저한도를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임금협상을 개시할 법적의무를 신설한다. 3개월 내에 고용주 측으로부터 제안이 없을 경우, 대표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15일 이내에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직업군이 재평가된 SMIC을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임금협상에서 새로운 활성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는 임금의 동태가 거의 항상 직업군 임금협상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쟁점이다.

VIII. 유급휴가권의 자동적 개시

현 황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유급휴가권은 동일 고용주 하에 실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함	근로자 채용 시 자동으로 유급휴가권 부여

일반적으로 유급휴가권은 동일 고용주 하에서 실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유급휴가권을 누리기 위한 동일 고용주 하의 최소 근로일수의 조건은 유럽법원이나 파기원이 상기시킨 바와 같이 공동체법에 저촉된다.

그리하여 바르스만법 제50조는 최소 10일의 근무기간을 충족해야 가능했던 유급휴가 신청에 대해 위 10일 근무 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최소 근무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채용 시 ‘자동적으로’ 유급휴가 신청권이 발생하도록 한다. 따라서 동일 고용주 하에서 최소 실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유급휴가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취득 휴가기간 산정에는 변동이 없다. 즉, 근로자는 실근로월 당 2.5일의 휴가를 취득하며, 1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휴가는 채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IX. 정보공개제도의 간소화

기업인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정보공개 비용의 지역 격차 및 정보 중앙집중화의 부재	정보공개절차의 간소화, 집중화

오늘날 정보공개 비용은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실제로 매년 도청이 법적 공고의 출당 요금 및 도 관할지역에서 이를 게재할 권한을 지닌 신문 목록을 정한다. 2011년 1행 당 요금은 세금제외하고 3.7유로에서 5.34유로 사이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제도를 공개기관(요금의 투명성, 비용의 예측가능성)과 관련 정기간행신문의 양방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왔다. 또한 정보공개는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는 신문의 종이판에 게재되며,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통틀어 찾을 수 있는 입력점(point d'entrée)이 없어 정보가 분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바르스만법은 정보공개 방식과 비용에 관하여 2개 규정(제101조 및 제102조)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수정한다. 하나는 회사의 존속 및 영업권에 관한 공고를 2013년 1월 1일부터 중앙에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에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의 열람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문에 게재되는 종이 버전과 함께 비물질화(전산화)된 온라인 버전으로 이중 게재된다.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단일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1행의 요금은 언론기업을 가장 대표하는 직업단의 의견을 거쳐, 경제부장관과 통신부장관의 행정규칙인 공동아레떼로 매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집단절차 차원에서 게재된 정보 등의 특정 분류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요금을 할인하도록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지역별로 공공정보를 공개할 권한을 갖춘 언론매체를 심사하는 자문위원회가 조직될 수도 있다.

X. 소액 공공조달의 간소화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소액시장에 대한 과중한 요구사항	절차 면제의 한도를 4,000유로에서 15,000유로로 상향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공공조달 시장에 있어서 절차 면제의 제한선은 지금까지 4,000유로로, 유럽연합 회원국 대다수가 정한 수준인 10,000유로 이상에 못 미친다. 때문에 이러한 제한선의 상향조정은 공공구매자와 기업, 특히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바르스만법은 이러한 절차면제 제한선이 4,000에서 15,000유로로 상향조정하였다(제118조). 이는 특히 극소(마이크로) 내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과 공공구매자 양방을 위해 소액시장의 장부기재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시간절약은 물론 소액 공공조달시장의 장부기재 관련 비용이 절약되며, 법적으로도 더 안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XI. 운영보고서 등의 법원 제출의무 간소화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불이익 정보를 담은 운영보고서의 법원 제출 의무 및 회계보고서의 2부 제출 의무	운영보고서의 법원 서기과 제출의무를 열람으로 대체하며, 회계의 법원 서기과 2부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제출로 대체

모든 상업적 회사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비롯한 회사상황, 연구개발 활동, 예측 가능한 변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사법원의 서기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업 자신 또는 경쟁업체에 이익을 야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운영보고서의 공개의무는 회원국의 기업 본사에 비치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운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는 1978년 7월 25일자 유럽지침 제78/660/CEE호를 받아들임으로써 간소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관계자라도 법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 본사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운영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한 바르스만법 제9조의 간소화는 기업 본사에 공공열람용 정보를 비치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기업정보공개는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법원 서기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의 제출 의무 및 제출 방식은 오늘날 2부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부는 법원 서기과가 관리하는 상업·회사등록부용이며, 다른 1부는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INPI)가 관리하는 상업·회사 국가등록부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회계보고서 1부를 서기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서기과 담당자는 제출된 단일본을 1-2개월 내에 디지털화하여 위 INPI에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점차 온라인 문서제출이 장려될 것이다.

XII. 상장기업의 정보자료집 발간 의무 폐지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상장기업은 공동체법이 강요하지 않는 연간 정보자료집 발간 의무	상장회사에 부담이 되는 연간 정보자료집 발간 의무 폐지

화폐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제L.451-1-1조는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연간 회계가 공개 후 지난 12개월간 공개한 정보를 모두 담은 연간 자료집을 금융시장 당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명 ‘취지서’(Prospectus)라 불리는 이 같은 자료집 제출의무 규정은 기존 2003년 11월 4일자 법령 제2003/71/CE호 제10조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 제10조는 재정투명성 관련 2004년 12월 15일자 지침 제2004/109/CE호가 요구하는 연간 및 분기별 재정정보고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법령 제2010/73/UE호에 의해 이미 폐지된 바 있다.

그리하여 바르스만법 제24조는 상장기업에 대하여 쓸데없고 중복되는 부담을 제거하고자 연간 및 분기별 재정정보고서 외에 요구되는 다른 의무들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감은 기업의 재정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진될 것이다.

XIII. 원격근무(자)의 개념 정의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원격근무 실시방식을 언급한 노동법 규정의 부재	원격근무 및 원격근무자의 개념 정의

원격근무에 대해 2002년 7월 16일 유럽 복지제휴기관 전체가 서명한 유럽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협약은 다시 2005년 7월 19일 직업

간 국가협약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어떤 노동법 규정도 불균등하게 확장되는 원격근무 실시방식을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형태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노동법에 통합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원격근무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바르스만법 제46조는 원격근무(télétravail)와 원격근무자(télétravailleur)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원격근무는 고용자가 지정한 곳에서 수행될 수 있는 근무방식임에도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규정 및 의사에 따라 이들 장소의 범위 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근무형태”이며, “원격근무자는 채용 시부터 또는 채용 후에 전 항에 정의된 근무 방식을 시행하는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외에도 바르스만법은 2005년 7월 15일자 직업간 국가협약의 규정을 들어 원격근무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XIV. 경영금지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파일 신설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경영금지 대상자를 식별하기 어려움	경영금지자에 관한 단일파일 신설

법원에 의해 운영금지 또는 개인파산조치가 내려진 자가 상업·회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이를 제대로 식별할 방식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전과 확인은 문서를 취득하기까지 종종 긴 시간이 걸리는 등록감시 위임관사의 요청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금지 조치를 망라한 기반은 완전 부재한 상태이다.

나아가 상업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상업등기부(RCS)에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비상업자(장인, 회사경영자 또는 협회경영자)에 대한 경영

금지 조치는 상업·회사등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법원 서기관이 열람할 수 없는 전과기록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영금지 조치를 국가적으로 중앙 집중화할 수 있도록 바르스만법은 상법 내에 상사법원 서기관 국가심의회가 관리하는 경영금지자 파일을 신설할 규정을 추가시켰다. 그리고 사법부의 특정 부서 외에 사기방지 업무를 맡은 조직 및 행정기관도 이러한 파일의 개별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기행위를 제한할 뿐 아니라, 등록검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등록 후 다시 말소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XVI. 직업외 원인에 기한 근로부적격 관련법률 개정

현 황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비직업적 부적격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계약이 사전통지 기한까지 지속	비직업적 부적격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계약의 사전통지 기한 폐지

현재 직업 외적인 사유로 신체적으로 부적격이 신고된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약하기 전 사전통지 기한(일반적으로 2개월)을 보유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전통지를 할 능력조차 없어 보수도 배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더구나 근로계약이 파기되지 않은 까닭에 실업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바르스만법 제47조는 직업 외적인 사유로 부적격으로 해고된 경우 사전 통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 덕분에 근로계약의 파기는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전통지 기한이 아닌 해고통지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변경으로 부적격으로 인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며, 해당 근로자는 실직보험의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XVI. 기명식 사회보장 회사신고제 실시

기업인들이 표명한 어려움	법으로 도입된 간소화 조치
기관들 간의 느린 정보교환 및 과중한 행정적 부담	단일, 기명, 월별, 전산화되어 급여 책정 시 자동으로 회사신고

사회복지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전송되는 데이터는 오늘날 기업이나 기관별로 종합되어 있다. 따라서 징수기관(URSSAF)은 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부담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지데이터신고(DADS)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연간 세부요약서를 요청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공단(의료보험공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해당년도 운영에 필요한 특정 정보(의료보험의 일일 보상금, 실업보험금, 최저 사회복지금 산정 등)의 수집은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특수신고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바르스만법 제35조는 부담금 납부, 의료보험 및 퇴직금, 또는 실업보험을 막론하고, 각 근로자의 보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요소들을 통합하므로 기명식(nominative)이라 불리는 단일 회사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즉, 근로자 고용 시 30개에 달하는 기존의 신고사항을 대체하며 질병, 퇴직 및 실업보험 신고를 통일한 단일한 사회보장 기명신고서가 보편화된다.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각 근로자별 데이터는 비물질화(전산화)되어 안전한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전달될 것이다. 급여책정 시 자동으로 되는 이 신고는 간소화는 물론 이용자와 행정기관 간의 교류에 신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법은 단계별로 기명식 회사 신고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선 2012년 1월 1일부터 자발적, 선택적 방식으로 시작하여 늦어도 2016년 1월 1일까지 의무적 방식으로 바뀐다. 이 조치가 일반화되는 2016

년부터는 동일 기관 및 행정기관이 회사신고 명목으로 이미 제작된 데이터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다.

제 4 장 결 론

제 1 절 바르스만법 제정 이후의 추가 조치

I. 부처간 위원회(CIMAP)의 조직

2012년 5월 조각된 올랑드 정부도 지속적인 법률 및 제도 간소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 2012년 12월 18일 공공활동 현대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는 “공공활동 현대화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CIMAP)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간소화 정책에 대한 자문 제공과 정책지도를 담당하는 기업을 위한 부처간 간소화 협력그룹을 조직했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프랑스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 경쟁력 및 고용 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7개 선결 주제를 설정했다.

(1) “한번만 말해주세요”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사회연대복지 납부금제도 간소화

이 프로그램은 행정기관이 기업에 요구하는 중복 정보의 감축을 목적으로 2015년까지 30%, 2022년까지 100%의 중복정보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2013년 현재 30개의 행정신고서가 선정되어 중복정보 기재를 폐지하고 있으며 250,000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기업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모든 관련 부처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

(2) 기명식 사회보장 신고제 시행 기업 선정

바르스만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단일화되고 간소화된 기명식 사회보장 신고제를 추진하고 신고의무 업무를 감소하고자 30개의 기

업을 선정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신고내용을 4개(고용주확인, 근로자근무이동, 보험금지급신고 및 사회보장혜택취소)로 축소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간소화는 2016년부터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3) 기업소유 부동산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간소화 제안

기업의 부동산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부동산취득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이 심의중이며 2013년 여름에 법률 초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4) 기업 지원규정의 간소화

프랑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정보제공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창구” 웹사이트(guichet-entreprises.fr)의 업무를 확대한다. 2013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구성된 “기업창구”사이트를 통해 기업에 대한 모든 공공지원정보를 단일화 한다.

(5) 중복법률로 인한 기업부담 방지

2013년 하반기 국립산업위원회의 전략위원회가 해당 법률 경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6) 기업자문방식과 관련법률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테스트”

표본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관련 신법의 영향과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심의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테스트를 시행한다. 이미 2013년 상반기에 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세법과 제조생산품의 지리적 표기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의 업무에 끼치는 영향과 개정 필요성에 관한 평가가 시행되었다.

(7) 수출세관 절차 간소화

수출절차의 단일창구설치를 통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추구한다. 2013년 1월 24일 대외무역부의 주관 하에 기업-세관 포럼이 열렸으며, 세관정보시스템의 수정과 개발이 진행 중이다.

II. 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간소화의 추가 조치

한편, 공공활동 현대화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해 이행된 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간소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⁵⁷⁾

1)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세법 적용 간소화 정책

- 인터넷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약 80%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인터넷을 통해 이행된다.
- 기업부동산세의 분할지불통지 및 부과 실효화
- 근로자의 세무신고 간소화
- 2014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세무신고 이행
- 정부자재납품업체에 대한 영수증 발급 신속화를 통한 공공비용지불 유예기간 단축 시행
-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양성직업평등에 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임무로 하는 웹사이트(ega-pro.fr) 개설

2) 수공업자와 상인을 위한 간소화 정책

- 인터넷을 통한 상업활동허가 발급 신청서류 제출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 강화
-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공자재구매 참여 지원프로그램 이행

57) 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Annexes du relevé de décisions, 2 avril 2013, pp. 64-65.

3) 환경 분야

- 기업 관련 환경법 간소화 작업 이행
- 환경현장에 부합하는 광산규정 개정
- 환경보호장비설치의 경우, 간소화된 허가절차 확대 및 신고절차의 실효화 추구

4) 농업 및 식품기업을 위한 간소화

- 휴대폰을 통한 서비스 개발 및 촉구 : 소비자가 농업 및 식품기업에 관한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획득하는 서비스 제공
- 인터넷과 담당기관 방문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관련 기업정보 제공

제 2 절 평가 및 시사점

바르스만법, 즉 “법의 간소화와 행정절차 감경에 관한 법”은 법령 규정의 명확화 내지 단순화를 통해 행정을 간소화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합리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제한적 법령을 개폐하여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기업에게 부담이 되어왔던 각종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하고 기업 내부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감경하는 내용의 규정이 이 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법의 이름조차 소위 “간소화법”이라 불리는 것은 그 특징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이 규제완화적인 규정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기존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요건과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정하고 책임을 강화하며, 새로운 정의규정을 두어 기존에 적용되기 힘들었던

사항을 법에 포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새롭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절차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호한 규정을 탈피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를 둔다는 차원에서 이 법이 추구하는 간소화(simplification)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간소화의 방향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 있다기보다는 이른바 “올바른 규제”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행정간소화의 의의와 관련하여 “규제”의 의미를 다시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규제는 통상 행정규제기본법에서의 규제를 말하며, 그 개념은 중국적으로 “권리 침해”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와 이론에서 등장하는 규제는 반드시 권리침해의 양상을 띠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좀 더 폭넓게 “정부가 만드는 규정”(regulation)을 규제라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모든 규정을 규제라 할 수 있고 절차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규제의 범위 속에서 논하여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개념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절차간소화, 서식간소화 등의 행정간소화도 결국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의 범위 속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바르스만법의 입법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의 목적에 따른 입법기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법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

I. ○○법전 제○장 제○절 제○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제○조 제○항의 용어 “...”는 용어 “...”로 변경한다.
- 2° 제○조 제○항의 용어 “...”뒤에 용어“...”를 삽입한다.

II. 위 법전 제○장 제○절 제○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조 제○항의 용어 “...”를 삭제한다.

2° 제○조 제○항은 삭제한다.

130개가 넘는 조문 수를 가진 이 법은 각 조문에서 이렇게 개정 대상의 법률과 그 구체적인 조문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개정 대상 규정을 검토하고 있노라면, 이렇게 각 조항에서 다양한 법의 다양한 조문의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과연 이 법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對 기업행정 절차 간소화’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가 하는 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즉, 각 법전(code)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유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다수의 개별 법령들이 법률 하나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개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론 내지 반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입법절차에 따를 경우, 수십 개의 별개의 법안 또는 개정안의 제출이 불가피했을 복잡다기한 사안들을 “간소화”라는 명목의 법 하나로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일련의 이른바 “간소화” 법률들을 통해 프랑스의 정부와 의회가 마치 “새로운” 입법방식을 고안해 낸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통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방식의 법안제출이 가능했던 배경은 현재 프랑스의 경제상황을 일종의 “위기”로 규정하고 그로부터의 탈출이 “긴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하는 정계의 논법이 입법의 분야로 흡수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기상황에 대한 탈출이 시급한 상황이니 어쨌든 빨리 처리하자’는 식의 논리는 적어도 입법 분야에 있어서는 경계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어디까지나 절차의 간소화이지 그것이 곧바로 경제 활성화와 같은 가시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정도일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직 간소화법이 시행 초기인 상황에서 평가를 내리기에 이른 감도 없지 않으나, 소위 포괄적 내지 일괄적 입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평가는 행정법규라고 생각되는 법령들만 손질하는 방식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현실생활에서는 다수의 법이 혼용되고 개별 사례에서도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간소화에 있어서 재정적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및 보건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동일하게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개별법의 특정 조문만을 가지고 존치 여부를 논하는 경향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관련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일괄적인 개정 작업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그런 의미에서 나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행정의 간소화나 법령의 간소화, 기업의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은 법령 몇 개의 손질이 아닌 입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일괄적 내지 포괄적인 형태의 이러한 입법이 가능한 것은 프랑스 특유의 법전화(codification), 즉 각 해당 법령에서 개정 조문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인 입법방식으로 제정하더라도 곧 그 해당영역의 기본법으로 이관되어 “기본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다만, 관련되는 기본법전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상호 연관성 없는 영역의 개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입법방식을 취하는 경우,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입법형식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지, 특히 이러한 법을 담당하는 부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입법방식” 자체의 문제보다는 규제 및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을 현실화하여 충분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⁵⁸⁾

58) 정병규, “네거티브 규제도입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회의록, 2013. 5. 3, 103면 이하. 예컨대 규제의 범위 속에 행정부의 관할과 거리가 있는 민상법 또는 세법, 노동법, 복지 분야에서의 영역은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기업이나 국민들에게는 이에 대한 제한이 더 큰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폭넓게 이해하고 규제개혁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병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 n° 106, 한국법학원, 2008.

김용우,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2010.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2012.

안혁근,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 KIPA 연구보고서 2007-21, 2007.

홍기원, “2012년 3월 22일 행정절차간소화법의 입법과정과 쟁점들”, 프랑스 행정간소화에 관한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3. 5. 3.

OECD/KOREA Policy Centre, 행정간소화 전략, 2010.

OECD, 규제개혁과 행정간소화 : 행정간소화를 위한 국가전략, 2008.

외국문헌

Assemblée nationale,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s du mardi 11 octobre 2011, n° 87 A.N. (C.R.).

Assemblée nationale, Compte rendu intégral, 3e séance du mardi 31 janvier 2012, n° 11 [3] A.N. (C.R.).

Assemblée nationale,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s du mercredi 29 février 2012, n° 29 A.N. (C.R.).

참 고 문 헌

Assemblée nationale, 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è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présentée par M. Jean-Luc Warsmann, le 28 juillet 2011, XIIIe législature, n° 3706.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 sur la proposition de loi (n° 3706) de M. Jean-Luc Warsmann,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è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par M. Étienne Blanc, 2 vol., le 5 octobre 2011, XIIIe législature, n° 3787.

Assemblée nationale, Texte adopté, 18 octobre 2011, XIIIe législature, n° 750.

Assemblée nationale, Texte adopté, 31 janvier 2012, XIIIe législature, n° 836.

Assemblée nationale, Texte adopté, 29 février 2012, XIIIe législature, n° 871.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n° 2012-649 DC du 15 mars 2012.

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Annexes du relevé de décisions, 2 avril 2013.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Examen stratégique du programme “Mieux légiférer” dans l’Union européenne, du 14 novembre 2006, COM (2006) final.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du 24 janvier 2007 Programme d’action pour la réduction des charges administratives dans l’Union européenne, COM (2007) 23 final.

- OECD,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1997.
- Sénat,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 du mardi 10 janvier 2012, n° 1 S. (C.R.).
- Sénat,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 du lundi 20 février 2012, n° 21 S. (C.R.).
- Sénat, Texte rejeté, 10 janvier 2012, n° 43.
- Sénat, Texte rejeté, 20 février 2012, n° 77.
- Annales de la régulation, Vol. 1 (2006), Paris : L.G.D.J., 2006.
- Annales de la régulation, Vol. 2 (2009), Paris : L.G.D.J., 2009.
- Calandri, Laurence, Recherche sur la notion de ré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aris : L.G.D.J., 2008.
- Chérot, Jean-Yves, Droit public économique, 2e édition, Paris : Economica, 2007.
- Colin, Frédéric, Droit public économique : Sources et principes, Secteur public, Régulation, 2e édition, Paris : Gualino, 2008.
- Frédéric Lefebvre, Jean-Luc Warsmann, Loi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è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Dossier de presse, mars 2011.
- Jean-Luc Warsmann, La simplification du droit au service de la croissance et de l'emploi,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juillet 2011.
- Kirat, Thierry et Frédéric Marty, Économie du droit et de la réglementation, Paris : Gualino éditeur, 2007.
- Lefebvre Frédéric et Warsmann Jean-Luc, Loi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è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Ministère

참 고 문 헌

-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1er mars 2001.
- Linotte, Didier et Raphaël Romi, Droit public économique, 6e édition, Paris : Litec, 2006.
- Lombard, Martine, Régulation économique et démocratie, Paris : Dalloz, 2006.
- Marcou, Gérard et Franck Moderne (sous la direction de), Droit de la régulation, service public et intégration régionale, 2 vol., Paris : L'Harmattan, 2008.
- République Française, Avis et Rapports du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2007.

웹사이트

- [http : //www.rrc.go.kr/](http://www.rrc.go.kr/)
- [http : //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1276.html](http://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1276.html)
- [http : //www.vie-publique.fr/decouverte-institutions/institutions/administration/modernisation/attentes-usagers/qu-est-ce-que-simplification-formalites-procedures-administratives.html](http://www.vie-publique.fr/decouverte-institutions/institutions/administration/modernisation/attentes-usagers/qu-est-ce-que-simplification-formalites-procedures-administratives.html)
- [http : //warchives.gouvernement.fr/fillon_version2/gouvernement/la-simplification-du-droit-un-enjeu-pour-la-competitivite-des-entreprises.html](http://warchives.gouvernement.fr/fillon_version2/gouvernement/la-simplification-du-droit-un-enjeu-pour-la-competitivite-des-entreprises.html)

부 록

- 프랑스 행정간소화법의 주요 목록 -

I. 제1차 간소화 법률(2007년 12월 20일자 법률)

- 법의 목적(제1조)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참석자 범위 확대(제2조)
- 개인회생 절차의 간소화(제6조)
- 결혼 전 상대방의 건강에 관한 혼전증명서의 폐지, 출생 후 부과되는 신체검사에 관한 절차의 축소, 재산 상속에 관한 세무신고 접수증 교부의 폐지 등(제8조)
- 상속 및 결혼 문제를 다루는 특수한 전문공증인에게 상속인의 자격에 대한 증명서로서 신원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사망확인서 이외의 이러한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제9조)
- 기업의 의무에 있어 세금납부기관에 직업훈련세(taxe d'apprentissage)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다음 해 3월 1일 이전에 그 당해 부족액을 추가 명령(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완화 및 내부 기능을 간소화(제13조)
- 협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물의 무상 점유 또는 이용 허용(제18조)
- 유흥업소에 대하여 문화적인 장소 및 학교와 같은 다른 보호건축물과 최소 이격거리 산정의 원칙을 개정(제24조)
-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영상(화상) 통신의 방식으로 직접 연결된 방청실에서 일반인에게 재판의 방청 허용(제25조)

II. 제2차 간소화 법률(2009년 5월 12일자 법률)

1. 시민과 사용자를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간소화

- 프랑스에서 외국인 파트너에 관한 법적 효력에 대한 개선(제1조)

부 록

- 직업적인 사유로 인해 주거지를 변경한 모든 자에게 선거명부에 연중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확대(제2조)
- 벌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인용된 경우 공탁금의 자동 반환(제3조)
- 노인을 수용하는 요양시설 및 사회복지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신고절차의 간소화(제4조)
- 상속포기 방식의 개정(제5조)
- 공유재산의 매매 절차 간소화(제6조)
-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평가 기준의 완화(제7조 및 제8조)
- 과밀로 파괴된 건물의 재건축(제9조)
- 「민법」의 전문용어 현대화(제10조)
- 형사사건 규정의 개정에 따른 협력 방식(제11조)
- 프랑스 국적신고 등록조건의 간소화(제12조)
- 미성년자에 관한 후견인 제도로의 가정법원(JAF, Juge aux Affaires Familiales)의 업무 확대(제13조)
- 가정법원의 관할 확대 및 이혼선고 후 배우자의 재산배분 규정의 간소화(제14조)
- 망명법원(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의 법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제15조)
- 사냥허가 및 동반사냥 허가절차의 간소화(제16조)
- 각 고등법원에 대하여 국제 입양에 관한 전문화된 지방법원을 지명할 권한 부여(제17조)
- 연금에 관한 재판의 재판(제18조)
- 경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기구 및 연구원에 대한 회계자료의 공개(제19조)
- 은행미불금의 직권적인 압류금지(제20조)
- 전문가의 정보전달 의무규정에 대한 입증책임(제21조)
- 자산의 이용에 불가피한 동전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가 작성하는 소비자 정보(제22조)

- 국내운송조직 법률규정의 혜택으로부터 운송위탁기업과 이삿짐 센터의 배제(제23조)
- 소비 분쟁에 관한 민사법원의 관할에 대한 규정 정비(제24조)
- 장제 법률에 관한 2008년 12월 19일자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회복(제25조)

2. 기업 및 전문인을 위한 간소화 대책

- 임금노동자와의 합의에 따라 급여지급명세표의 비물질화(전자화) 구현(제26조)
- 50인 이상의 임금노동자 기업에 의해 작성된 경제보고서를 노동 감독국에 제출할 의무 규정의 폐지(제27조)
- 후임자 선출까지 노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능 유지(제29조)
- 사안파악을 위해 역량 있는 노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이관된 사안의 반송(제30조)
- 노사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원인 피고용자의 급여를 고용주에게 환급 신청하는 조건에 대해 노동법의 적용(제31조)
- 비영리기업위원회에 대한 회계전문가의 지원(제32조)
- 모든 운송회사에 대한 노동법 제4권 적용(제33조)
- 기업 연수자보호제도의 개선(제34조)
-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및 고용주에게 전리방사선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제36조)
- 노동법의 중복 규정 삭제(제38조)
- 생계 수단이 없는 유랑자 또는 사람의 지도 하에 어린이를 방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제40조)
- 노조대표가 체결한 기업의 협약에 대해 투표를 통해 승인할 권한을 차기 선거까지 연장(제42조)

부 록

- 노조 및 직업기관의 회계자료와 관련한 일부 의무규정의 시행시기 정렬(제43조)
- 「연금법」에 의거한 제3자를 위한 특수한 증액의 압류 금지(제44조)
- 삽화가의 보충퇴직연금의 재정 조달(제45조)
- 유럽공동체 회사의 신설을 위한 합병의 합법성에 대한 회계감사인사의 사명과 부적합성(제46조)
- 상업도시계획과 관련한 조항의 명확한 규정(제47조)
- 에너지망의 정보 파악을 위한 단일창구의 신설(제48조)
- 가스, 탄화수소 및 화합물의 배관망을 통한 운송체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입법 권한 부여(제49조)
- 핵 기반시설에서 압축설비의 감독(제50조)
- 농업고용주 및 흥행공연 활동종사자를 위한 급여의 일부 신고제도 간소화 및 농업종사자 지원금 지급절차의 단순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업사회복지 분담금위원회의 폐지(제51조)
- 1945년 이전에 직업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한 외국인 의사 및 조산원에 대한 허가규정의 폐지(제52조)
- 정형의사 및 지압사 자격인정에 대한 규정의 확대(제53조)
- “전문직업사이트”에 대한 정의의 간소화(제54조)
- 공화국 검사의 소비분야에 있어서 감정전문가를 지명할 가능성의 일반화(제56조)
- 관세사의 직업 수행을 위한 신입장 이중발급의 폐지(제57조)
- 보세물류창고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통용되지 않는 규정의 폐지(제58조)
- 보세물류창고 화물의 보관기간과 관련한 관세법 규정의 개정(제59조)
- 세금 및 공공요금의 환불을 거부하는 행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소송 청구 기간의 조정(제60조)

- 관세의 조정 및 감정에 관한 소송절차의 현대화(제61조)
- 농업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화(제62조)
- 원산지 및 품질확인에 관한 명확한 규정(제63조)
- 포도재배 양조시장의 공동기구에 관한 2008년 4월 29일자 위원회 규칙 제479/2008호에 프랑스법 적용
- “생떼밀리옹 그랑 크뤼(Saint-Emilion grand cru)”에 대한 포도주 원산지 표시 등급지정의 연기(제65조)
- 삼림에 관한 환경적합증명 및 자연보호증명(제66조)
- 수의학 약품시장 설치허가에 대한 개정절차의 단순화(제67조)
- 국세청 및 공인회계청이 수행하는 사명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 지침을 통해 수정하기 위한 입법 가능성(제68조)
- 「농촌법」 및 「삼림법」의 일부 법률부분을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권한(제69조)
- 동일한 꼬뮌 지역에서 담배판매소의 이전과 관련한 규정의 개선(제70조)
- 변호사 간의 협력계약에 따른 소송 및 분쟁에 대한 변호사회 회장의 중재(제71조)
- 변호사 간의 분쟁에 대한 변호사회 회장의 중재(제72조)
- 국가변호사위원회의 구성(제73조)
- “기업의 일자리서비스”의 시행(제74조)
- 중앙사회복지기구(ACOSS)의 중재, 사회복지분담금 및 가족수당 징수연합회(URSSAF)의 대항력, 사회복지에 관한 법의 남용에 대해 규정하고, 비신고 노동에 대한 분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단체 내 부차적이고 연대적인 책임에 대한 개념의 정의(제75조)
- 유한책임회사(SARL) 및 자유활동기업의 공동경영자 개념의 규정, 주식을 통한 자유활동기업 사장 및 대표, 은행의 협력회사 사장의 총괄적 체제 등 제휴에 대한 규정(제76조)

부 록

- 공동명칭을 가진 회사의 형태로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담배판매소 운영 가능성(제77조)
- 노동감독국 업무의 통합을 위해 「농촌법」, 「사회복지법」 및 「노동법」의 법률 부분을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제78조)

3. 지역단체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대책의 단순화

- 생-바르텔레미 프랑스 해외영토에서 법정 공고 및 법률 공고에 관한 규정의 단순화(제79조)
- 의회보고서 제출의 폐지(제80조)
- 데빠르트망 의회의원 대체방식의 단순화(제81조)
- 데빠르트망 또는 레지옹위원장이 대리하는 소송과 관련한 규정의 단순화(제82조)
- 데빠르트망위원회 또는 레지옹위원회가 그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역량의 확대(제83조)
- 긴급승인을 제외하고, 협회에 지급되는 지역단체지원금에 대한 다른 협회의 수령 금지(제84조)
- 지방경찰대와 관련한 규정의 수립 절차(제85조)
- 지역단체의 심의 결정 방식의 단순화(제86조)
- 「지역단체일반법」의 일부 법률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제87조)
- 정부가 지침을 통해 지방 및 통합노동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 및 회계 규정의 간소화 대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제88조)
- 장제 법률과 관련한 오기 수정(제89조)
- 회사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재판 관할권 규정의 단순화(제90조)
- 사회복지와 관련해 통용되지 않는 규정의 폐지(제91조)

- 「교통법」, 「광산법」 및 「에너지법」을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적용하고 「환경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제92조)
- 국립삼림센터 및 지역삼림센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공공행정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가능성 부여(제93조)
- 행정위원회 규모의 감소(제94조)
- 국유채권의 회수 및 다양한 정부수입(납부금, 국유지 임대료 등)의 간소화된 채권 압류절차의 신설(제95조)
- 지역단체 회계증명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단순화(제96조)
- 지역단체에 적용하는 규정의 명확한 정의와 단순화(제97조)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시 꼬뮌 간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제98조)
- 협조 불이행에 대한 취소 및 수정안 채택절차의 개정(제99조)
- 보존고고학의 예측수행 업무와 관련한 결정을 수행기관에서 대행하도록 지역공동체에게 허가(제100조)
- 시 관할 일부 지방 도로에 접근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권한(제101조)
- 관할지역 개선에 대한 지침에서 소액 벌금을 적용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의 신설(제102조)
- 철도 화물 및 승객 수송의 공공서비스를 감안하지 않고 발생된 교통법규위반 벌금의 징수에 관한 분쟁의 중앙 집중화(제103조)
- 의회 상근위원장의 청구에 따라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에 의한 인증절차의 완화(제105조)
- 유럽공동체 외부에서 파일의 전송을 허가하기 위한 권한을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가능성(제106조)
- 징수금 및 세금 납부일을 청구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통관증개인에 대한 의무규정(제107조)

부 록

- 「조세일반법」에서 통용되지 않는 근거자료의 수정(제108조)
- 지적정보의 접근권에 대한 사법적 근거의 명확한 규정 및 이메 일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권리의 신설(제109조)
- 분할데이터베이스자료의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정보내용의 확산에 대한 허가(제110조)
- 건강, 사회복지 또는 의료복지시설, 공공이용시설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기증 및 유증에 대한 효력 기준의 간소화(제111조)
- 의료사고의 보상과 관련한 규정의 개선(제112조)
- 공공도살장에 대한 재정조달 규칙의 간소화 및 현대화(제113조)
- 등급별 공공도살장 설치에 적용하는 규정의 간소화 및 초래되는 위험에 따른 규정의 적합성(제114조)
- 상업항공 부문의 단순화 대책(제115조)
-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한 사법적 보호부문에서 법률제도의 질 개선(제116조)
- 도시계획법에서 근거자료의 오류에 대한 수정(제117조)
- 시장 수당의 최대 한도금액 고정을 위해 새로운 인구조사 방식의 고려(제118조)
- 시 꼬뮈 간 지방경찰과 관련한 규정의 완화(제119조)
- 적법성의 감독을 받는 지역단체의 행위를 정부가 지침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제120조)
- 지침의 승인과 관련한 협조사항의 개정(제121조)

4. 형벌에 관한 법의 명확한 규정

- 재범에 관한 규칙의 명확한 규정(제122조)
- 형사법을 위반한 재범의 경우, 법률에 저촉되는 제도의 폐지(제123조)
- 법인의 형벌 책임에 관한 규칙의 명확한 규정(제124조)

- 25개 법에서 범인의 형벌책임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제125조)
- 전문직업으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된 자가 직장주소를 진술할 가능성(제126조)
- 원인모를 사망 또는 부상의 이유에 대한 수사 또는 용의자에 대한 수사의 범주에서 수사관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제127조)
- 사법경찰관에게 검찰총장이 부여한 자격과 관련한 분쟁(제128조)
- 유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위한 출두 절차의 개선(제129조)
- 유럽공동체의 구속 대리수행 및 범인 인도 결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제130조)
- 형사 판결에 관한 인터넷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청원(제131조)
- 형사재판에서 소환 및 판결통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제132조)
- 형사재판에 관한 단순화, 협조, 연계 및 조정(제133조)
- 형사재판에 관한 결정 및 협조(제134조)
- 시의원에 반대하여 비방을 한 경우 시장협회가 손해배상청구인으로 권리를 수행할 권한(제135조)

Ⅲ. 제3차 간소화 법률(2011년 5월 17일자 법률)

1. 개인 및 기업과 관련한 간소화 대책

- 사망증명서에서 동거계약 상대방의 이름 등록(제1조)
- 수도사용료 청구서의 비정상적 변동에 대한 사용자 보호(제2조)
-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거래 관리(제3조)
- 행정부간 데이터자료의 직접 교부(제4조)
- 형식상 하자와 관련한 청구의 조정(제6조)
- 흥행공연 부문의 단체 협약의 확대(제8조)
- 활동연대소득(RSA)의 수혜자에게 임대계약 해지예고 기간의 축소(제12조)

부 록

- 정부의 공적 기능에 따라 의무적인 사전 행정청구 시행(제14조)
- 사후 결혼이 승인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제19조)
- 사전(예비) 계약 시 서명인 간 대우의 차이 삭제(제22조)
- 벌금 납부 기한(제27조)
- 정비공장에 버려진 차량의 폐기 판명기간의 축소 및 이륜 또는 삼륜 오토바이 및 사륜 모터 자전거에 대한 확대 적용(제29조)
- 납(pb)과 관련한 진단 및 감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간소화(제38조)
- 실업보험 분담금 및 임금노동자 채권보험운영협회(AGS) 분담금의 징수 전환(제41조)
- 최초 3년 이상의 부모양육휴가 합의 가능성(제42조)
- 단체나 협회의 급여수표로 지불되는 휴가에 대한 일반규정의 적용(제43조)
- 불성실한 상거래와 관련한 유럽공동체법의 적법성 확인(제45조)
- 원거리 판매 기업에 대한 세일 시기(제47조)
- 일반 상점 개업에 대한 경영지도(제48조)
- 특정기간 고용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의료 부적합(제49조)

2. 기업의 관할권과 관련한 규정

- 현실적인 세무제도 하에서 회사의 회계규정의 간소화(제55조)
- 비영리적 이득을 얻는 자의 직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등록 규정의 단순화(제56조)
- 매우 간소화된 회계처리 감독을 받는 계열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회사에 현실적 조세 간소화의 확대(제57조)
- 회사 및 회사의 대리인 또는 주주 간에 체결된 협약의 공개(제58조)
- 재산목록 장부(livre d'inventaire)의 폐지(제59조)

- 무근로자 또는 그룹의 감독을 받는 주식회사의 자본 증액절차의 간소화(제60조)
- 우선인수권의 폐지와 함께 주식회사의 자본 증액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개입 방식(제61조)
- 회계감사인이 비지속성 경고절차를 수정할 권한과 증가된 재정적 보호절차 정비(제62조)
- 서비스 영업소의 임대료에 대한 새로운 분기별 지표에 따른 협약의 대항력(제63조)
- 회사의 병합 또는 분할에 있어서 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2009년 9월 16일자 지침(제2009/109/CE)의 개정(제64조)
- 기사에 대하여 저작권 명목으로 징수되는 보충수당(제65조)
- 온라인 신문출판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확대(제66조)

3. 형벌 규정의 간소화 및 명확한 규정

- 사체부검(제147조)
- 법원 결정의 공고 및 배포에 있어서 추가적인 형벌을 누적하여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제148조)
- 고의적 살인에 대한 가중사유 적용(제149조)
- 조직적 범죄에 대한 조사 방식에서 통합적 사기죄 적용(제157조)
- 도로교통법의 다양한 규정(차량의 임대 등)의 개선(제164조)
- 임시직 기업가의 활동금지 벌칙 규정의 명확화(제169조)

4. 기타 조치

- 프랑스 외에서 개설된 프랑스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권리(제52조)
- 기한이 만료된 처방에 있어서 만성치료 또는 경구용 치료와 관련하여 약사가 약을 감경할 수 있는 권리의 명확화(제89조)
- 도시 관문의 정비계획에 대한 집행 의무(제123조)

- 간선도로 주변의 건축과 시설물 설치 금지(제124조)
- 흰개미 퇴치와 관련한 절차의 단순화(제125조)

IV. 제4차 간소화 법률(2012년 3월 22일자 법률)

1. 기업분야

(1) 기업에 대한 규정 간소화

- 상인등록, 협동조합을 통한 소매상인의 영업권 전매 및 소매상인의 공동기업 구성(제1조)
- 상업임대차의 계약해지일에 대한 명확화(제2조)
- 영업양도 조건의 완화(제3조)
- 영업권, 상업임대차 및 상업용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꼬핀)의 선매권(先買權) 개선(제4, 5조)
- 주식회사(SA)의 임원 중복허가를 통한 경영임무체계의 현대화(제6조)
-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증식에 있어 주주의 만장일치에 의한 출자감독관 임명(제7조)
- 주식회사의 일정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감독관의 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제8조)
- 법원서기국에 대한 운영보고서 및 회계자료 사본 제출의무 폐지, 이메일을 통한 연간 회계자료 제출 권장(제9조)
- 유한책임회사(SARL)의 증자체계를 주식회사의 증자체계로 조정(제10조)
- 비상장기업의 최근 주주총회 투표권 변동이 없을 경우 투표권 공개 의무 삭제(제11조)
- 자회사의 지속적 발전 참여에 관한 정보제공방식의 간소화(제12조)

- 주식회사의 주식보유량에 따른 특별주주총회 통지조건 완화(제13조)
- 비상장 중소기업의 임직원에게 대한 무상주 제공 가능성 확대 및 완화(제14조)
- 주식시장 Alternext에서 주식을 매매수할 권리 확대(제15조)
- 다양한 법적 형태의 기업 간의 부분적 출자를 회사분할제도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제16조)
-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메카니즘의 개선(제17조)
- 특정 회계, 기명 및 청산정보의 공개명령,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청산인의 자격박탈 허용(제18조)
- 기업경영에 관련한 특정불법행위에 적용되는 형법의 일관성 강화(제19조)
- 일반법 상의 시효를 침부된 주식을 통한 기업의 증자에 대한 임의적 무효(제20조)
-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업그룹과 유럽기업그룹 명칭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정(제22조)
- 채권발행단체 및 부동산민간투자기업에 대한 회사법 개선(제23조)
- 상장기업의 연례 정보자료집 발간의무 폐지(제24조)
- 타기업 주식보유액의 법정신고제도 개선(이익의 현금결제 원칙 확대)(제25조)
- 생산노동자협동조합 및 공공이익협동조합의 경영 현대화(제26조)
-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벌금의 대상이 되는 허위기재 삭제 명령(제27조)
- 채권자총회결정에 속하는 기업보호 또는 회복계획에서 채권자 간의 종속계약과 지주회사의 재정보호촉진제도 접근 고려(제28조)

부 록

- 자유직 기업(SEL)의 사회보장에 대한 평가(제29조)
- 회계감독관이 작성한 문서전달 규정의 간소화(제30조)
- 직업총람에서 허가 및 등록 절차의 연관성 명확화(제31조)
- 미성년 기업가의 지위를 최소 연령을 16세로 규정(제32조)

(2) 기업의 사회보장에 대한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교통 지원금 인상일 지정(제33조)
- 사회보장 기명신고제(DSN)의 시행(제35조)
- 사회보험료와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에 준거한 사회보험료의 징수 합의절차 간소화 및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기금의 임원 임기 연장(제36조)
- 초과 근무시간 명목으로 지불되는 고용주 부담금의 감소 결정에 따른 계수의 명칭 통일화(제37조)
- 사회보장 규정의 재심절차 개발(제38, 39조)
- 이미 감사를 거쳐 적법성이 인정된 기간 및 작업장에 대한 새로운 근로감독 금지(제40조)
- 사회보장 보험료 지불신고와 고용 전 신고 시 금액 수정(제41, 42조)
- 노동법의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계수 통일화(제43조)
- 비전문 근로자의 전국 최저임금 및 최저 시급 준수를 위한 급여협상(제44조)
- 고용계약의 변동 없이 단체협약의 범주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제45조)
- 원격(재택)근무자의 지위에 대한 법적 정의(제46조)
- 직업 외적인 신체적 부적격으로 인한 해고 통보의 경우 통보 즉시 고용계약의 실질적인 해지 인정(제47조)

- 노동법에서 만 하루(24시간)의 개념을 근무일의 개념으로 대체 (제48조)
- 공휴일 조업중지의 경우에도 이전 고용근로자의 급여 보장(제49조)
- 유급휴가권의 자동적 개시(제50조)
- 급여명세서의 간소화(제51조)
- 급여예금 최고납부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 통일(제52조)
- 초소형기업(TPE)에 대한 근로안전 및 위생 관련 위험평가방식의 적용(제53조)
- 농약생산 기계의 개발 및 제작에 있어서 환경, 재산 및 동물보호 고려(제54조)
- 근로자의 복귀 시 전직 또는 동일 직위 부여(제56조)

(3) 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규정

- 직업노동조합기구, 직원 또는 고용자 단체의 회계보증 의무 규정 (제57조)
- 계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회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회계 의무규정의 단순화(제58조)
- 관세 절차의 단순화 및 현대화(제61조)
- 우체국 소인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제65조)
- 상업송금에서 발생하는 급여연체 방지에 관한 2011년2월16일 유럽연합지침 (n°2011/7/UE) 의 국내법 전환과 연체급여에 대한 보상금 적용(제121조)

(4) 부정행위의 척결과 관련된 규정의 단순화

- 기업경영금지자에 대한 국가 관리과일의 신설(제71조)
- 자금세탁방지 조치(제72조)
- 송금의심의 경우 정보 교환(제73조)

2. 그 밖의 분야

(1) 농업 부문

- 농촌 재산의 임대인에 대한 의무의 명확화제74조
- 농촌 재산의 임대로 발생한 부동산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선택방식의 간소화제75조
- 농업근로자의 가족행사를 위한 휴가에 대한 보충퇴직권 재정지원 개혁제77조
- 농업 하청업자를 위한 규칙적인 사회보장납부액 지불을 보장하는 농업사회보장제도의 의무를 농업고용주에게 부과제78조
- 농촌개발협력자 또는 농기업에 대한 이익분배 규정 확대제79조
- 무급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사회연대납부금 징수방식 정의제80조
- 농촌주택건설에 참여하는 농업고용주의 사회보장제도를 농촌주택건설기업의 사회보장제도에 병합조정제81조
- 삼림구역의 매각 광고방식 간소화제82조
- 포도주 생산분야에서 구매자와 생산자 간의 판매계약 체결방식 간소화제84조
- 포도수확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최소기간 규정제86조
- B종 운전면허 소유자의 농업 또는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운전허가를 관련 경제활동 종료 후에도 연장제87조

(2) 운송부문

- 운송회사에 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제91조
- 차량의 무게 및 규모와 관한 규정의 법적 관리제92조

(3) 여행 부문

- 관광지 및 숙박시설의 등급절차 간소화제94조 및 제95조
- 관광지 숙박시설의 계절적 임대계약 명확화제96조

(4) 미디어 부문

- 11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언론사의 기자 저작권에 관한 기업 협약에 근로자 노조대표 위임 규정 완화제98조
- 언론광고에 부과되는 신고 및 공탁의무 경감제99조
- 언론기관의 체계 현대화 및 간소화제100조
- 2013년 1월 1일 기업 및 펀드사에 관한 단일 전자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신설제101조
- 법원 공고 및 법률 공고제도의 간소화제102조

(5) 주택, 개선 및 건축

- 주택 공동소유자노조가 체결한 대부 보장제103조
- 역사적 기념물과 인접한 건물의 공사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제 106조
- 구획정리 대상지구의 지정-시행 절차의 간소화제108조
- 사회임대주택 매매제도의 현대화제109조

(6) 협회, 단체 부문

- 협회의 협약신청에 관한 일반 조건제123조
- 휴양지 교육참가계약을 체결한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법정 일일 휴가권 규정제124조
- 협회 탈퇴권제125조
- 시민단체에 지불된 사회보험금의 선구매 가능성을 제한하는 납부 최고금액 폐지와 단체법의 신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형벌 폐지제 126조 및 제127조

부 록

(7) 기타 부문

- 공공계약체결에 적용되는 구제절차와 공공근로계약에 관한 행정 명령 비준제113조
- 공고 및 경쟁절차를 요하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하한선으로서 15000유로제118조
- 세포치료와 관련한 행정적 허가절차의 간소화제122조